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 집배원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Ⅰ. 서론

Ⅰ.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2013년 10월 1일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실시한 2013년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일반행정서비스 부문 15년 연속 1위 위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1].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그럴싸한 포장과는 달리 '고객만족도 1위'라는 우체국의 실상은 질병이 당연시되고 사고에는 무감각해진 비참한 현실이었다. 2013년 12월 발표된 보고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은 21세기의 상식을 배반하는 집배원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연평균 3,379시간의 노동시간은 장시간노동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1.5배에 달하고 있었다. 구정, 추석, 선거기간 등 바쁜 시기에는 하루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서 사실상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혼연일체의 노력'의 실체는 비인간적인 장시간노동이었던 것이다.

극단적인 장시간노동은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집배원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내내 심근경색과 뇌졸중 고위험집단에 속했으며, 전체 집배원의 74.6%가 하나 이상의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은 이루어진 모든 조사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집배원은 배달 과정에서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집배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는 전국 꼴찌다. 다른 업종에서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 근골격계질환,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도, 탈진 정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불명예스러운 1등'이다. 16,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게다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1) <우체국! 고객만족도 15년 연속 1위 달성 비결은?>(2013.10.1.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집배원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전국 8개 우체국의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간략히 살펴본다. 집배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2)]

2) 자세한 내용은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2013.12. 노동자운동연구소) 참고.

Ⅱ.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2013년 11월, 일주일 사이에 2명의 집배원이 사고 및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다. 건강하던 31세의 집배원이 과도한 업무량과 초장시간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배달시간에 쫓기던 집배원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집배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겨울의 초입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재해들은 사실 집배현장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었다. 사망재해는 우체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현장 집배원들도 나서서 심각성을 알려나갔다.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물량에서 비롯되는 장시간노동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집배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13년 12월 19일에는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즉각적인 인력증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증원, 겸배 문제 해결, 초과노동 문제 해결 등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월, 또 다시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구조조정 이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집배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른 한 분은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무런 대책 없이 또다시 업무량이 늘어나고 빙판길로 배달에 위험한 동절기를 맞게 되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경고가 수차례 이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까닭에 벌어진 일이다.

2014년 1월 10일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결성되었다.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뜻으로 모인 것이다. 연대모임은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잘못을 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연대모인

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1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대모임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더 이상 집배원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중대재해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함평우체국 서○○씨의 경우 배달 중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인원이 구조조정되어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 등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사고를 당한 김○○씨에 대해서는 '집배원 본인과실'이라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진행한 대처방안이 '안전모 잘 쓰기'를 강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연이은 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장시간노동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정사업본부에게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 문제의 책임은 관할 정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있다. 집배원들의 중대재해문제를 줄이고, 장시간-중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빠른 대책은 단언컨대 인력충원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때문에 '1,900명 인력충원'을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충원 약속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집배원들의 연이어 사망·사고를 외면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마찬가지다.

연대모임의 고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울청의 몇 개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대모임이 지적한 수많은 집배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위반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보일러실과 식당의 몇 가지 시설 미비 등 집배원노

3) 산업안전-보건 및 노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서울 00우체국)

분야	지적사항	조치계획	추진일정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절차 마련	-안전관리자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본부 규정에 의해 추진할 사항임	본부건의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미실시	-청단위로 '14년도 교육실시 예정이므로 교육이수 후 지침에 따라 평가 실시 예정임.	서울청 건의
안전조치이행사항	-파렛트가 크고 무거우며 과다적재 경향이 있음	-과다 적재 즉기 시정 -파렛트 개선시 적극 건의	본부건의
	-보일러실 LNG 사용장소 상부 방폭등 설치	-예산시달 후 설치 예정(소요예산: 1,300천원)	예산요청(서울청)
	-보일러실 배관 상부 덮개 설치	-예산시달 후 설치 예정(소요예산: 500천원)	예산요청(서울청)
	-보일러실 화기금지 경고표지 부착	-즉시 시정	기조치
	-식당 및 보일러 MSDS(?) 비치	-즉시 시정	기조치
	-2층 및 3층 전기스위치 및 충전부 개선	-즉시 시정	기조치

동자 중대재해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몇 가지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이다.

2014년 4월 고용노동부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대모임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Ⅲ.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드러난 것만 1,182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았고, 19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4.3배나 더 많은 노동재해율이며, 6배 이상 높은 사망률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집배원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74.6%의 근골격계질환 유병율, 50%에 달하는 뇌심혈관계질환 고위험집단, 절반 이상의 사고 경험률 등은 대부분의 집배원노동자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심층면접에 응한 집배원들은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택배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치고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직원들이 많다', '집배실에 먼지가 많아서 환풍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빙판길 오토바이 운행으로 교통사고 문제가 너무 많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징계만 한다', '헬멧, 무릎보호대, 오토바이 앞유리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용하지 적절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문제를 은폐하고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대모임이 요구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대모임은 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고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직접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 및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우체국 노동자의 중대재해 자료를 분석하고, 32개국 우체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의 3장에서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을 4장에서는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부끄러운 현실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본 보고서가 그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의 5장에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을

덧붙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당장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고, 연대모임은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Ⅰ.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장시간·불규칙노동과 뇌심혈관계질환

1) 장시간 노동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따르면, 집배원노동자는 연평균 노동시간은 3,379시간으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에 비해 1,100~1,200시간 이상 많은 초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기에도 하루 노동시간이 10.8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기에는 하루 15.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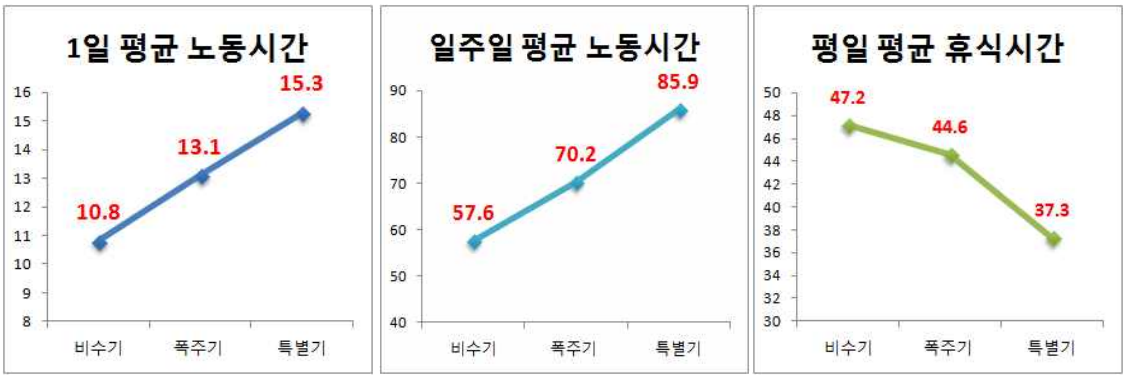

표 1 집배원노동자의 소통시기 별 평균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2) 짧은 휴식시간

평일 평균 휴식시간은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로 갈수록 오히려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의 휴식시간은 각각 평균 47.2분, 44.6분, 37.3분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시간은 바쁜 소통기간일수록 2~3시간 씩 증가하지만 휴식시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장시간 · 불규칙노동의 또다른 원인 겸배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겸배가 있다. 한 달에 겸배를 하는 횟수가 6일 이상인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한달 평균 5.7회의 겸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노동시간은 8.6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우정본부의 연가수당 감축 정책은 집배원노동자의 겸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4) 달리는 시한폭탄

게다가 집배원노동자는 매일매일의 물량에 따라, 소통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 비수기에 비해 폭주기와 특별기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12.6시간, 27.3시간 씩 증가하여, 집배원노동자의 90% 정도는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의 시한폭탄을 안고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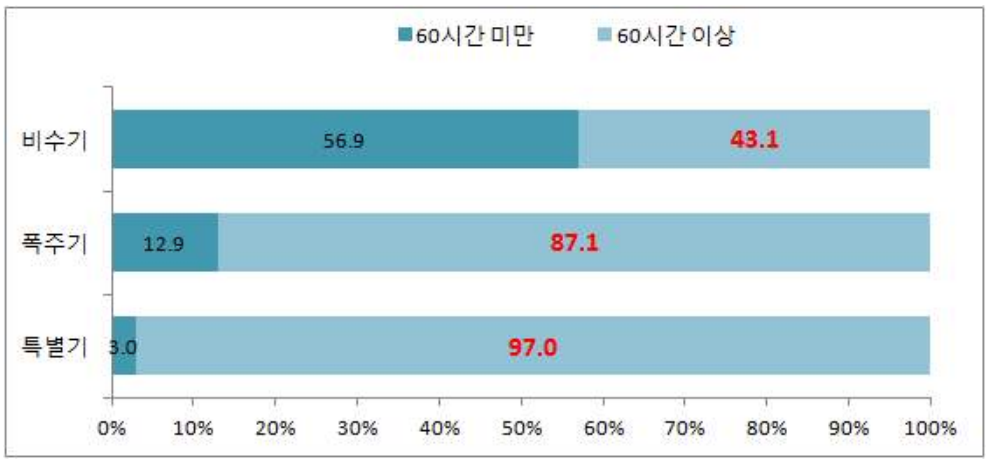

표 2 집배원노동자의 소통시기 별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이상 비율

2. 고강도, 장시간노동에 의한 골병

1) 일만 끝나면 탈진하게 만드는 노동강도

집배원노동자의 개인적, 직업적 탈진 평균 점수는 각각 48.2점, 45.3점으로 그 어떤 연구에서보다 탈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탈진은 직장생활 중에 쌓인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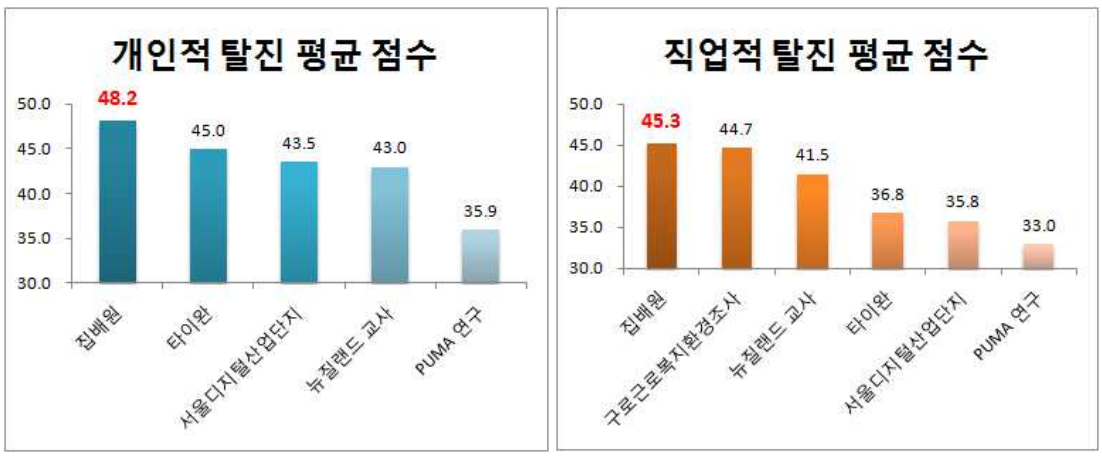

표 3 집배원노동자의 탈진 평균 점수와 다른 연구와의 비교

집배원노동자의 탈진은 겸배 횟수가 많을수록 더 심한 양상을 보여 과도한 겸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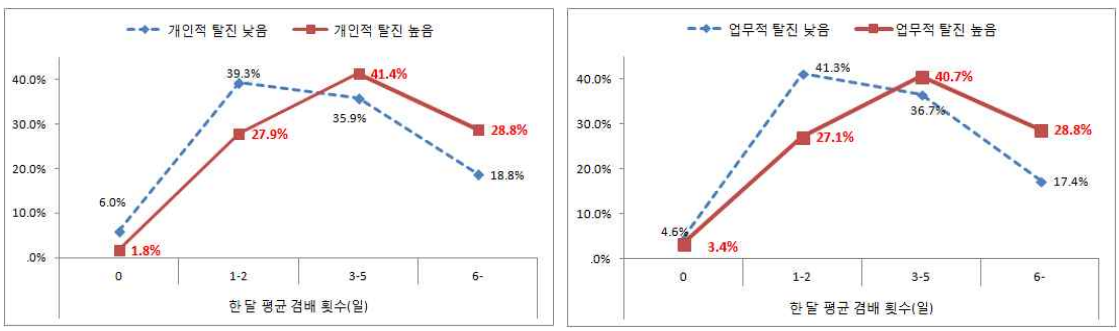

표 4 집배원노동자의 겸배 횟수 별 탈진 정도 비교

2) 집배원노동자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매우 심각하다

한 개 이상의 부위에서 근골격계증상을 가진 '증상 호소자'가 74.6%였으며,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는 43.3%였다. 절반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앓은 채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표 5].

신체부위	NIOSH 기준		기준2		기준 3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목	101	57.4	79	45.1	36	20.6
어깨	122	68.5	101	57.1	49	27.7
팔/팔꿈치	78	55.3	56	39.7	20	14.2
손/손목/손가락	89	57.4	72	46.5	25	16.1
허리	114	62.0	98	53.3	45	24.5
다리/무릎	117	65.4	99	55.3	48	26.8

표 5 집배원노동자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증상

집배원노동자와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의 다른 업종 연구와 비교하여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집배원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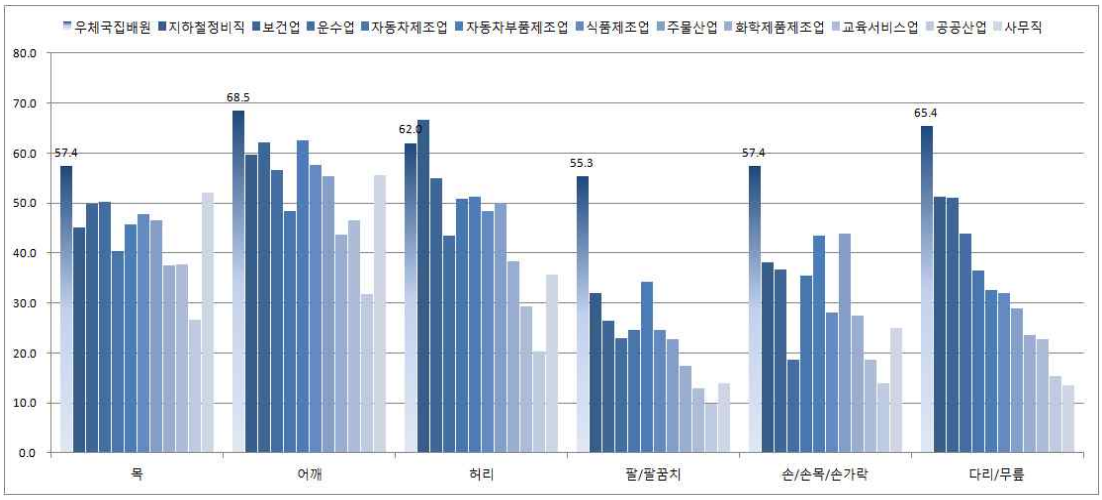

표 6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증상(NIOSH 기준)에 대한 집배원과 다른 연구와의 비교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노동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기 일주일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표 6].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1. 사고다발 사업장, 우체국

절반 이상의 집배원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및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된 퀵서비스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 유사 직종의 교통사고 경험률을 상회하고 있다. 운수업종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집단인데, 그 중에서도 집배원노동자의 사고 경험률이 더 높아 고위험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7].

연구자	연구대상	교통사고 경험률 (%)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소	우체국 집배원	51.0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	배달업 종사자	35.2
2010년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 종사자	38.7
2010년 인하대 산학협력단	퀵서비스 종사자	46.1

표 7 오토바이 운전직의 교통사고 경험률 비교

2. 축소·은폐되는 집배원의 노동재해·직업병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이 50%를 넘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 후 처리는 미흡하거나 집배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교육이 있긴 하지만, 사고 시 공무상 재해를 먼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실제 처리 과정에 들어서면 쉬쉬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 재해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처리 과정 또한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와 직업병이 다발하지만 상당부분 은폐되는 상황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표 8].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자 규모는 2010년 216명, 2011년 300명, 2012년 35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2.19로

전체 재해율의 3.7배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재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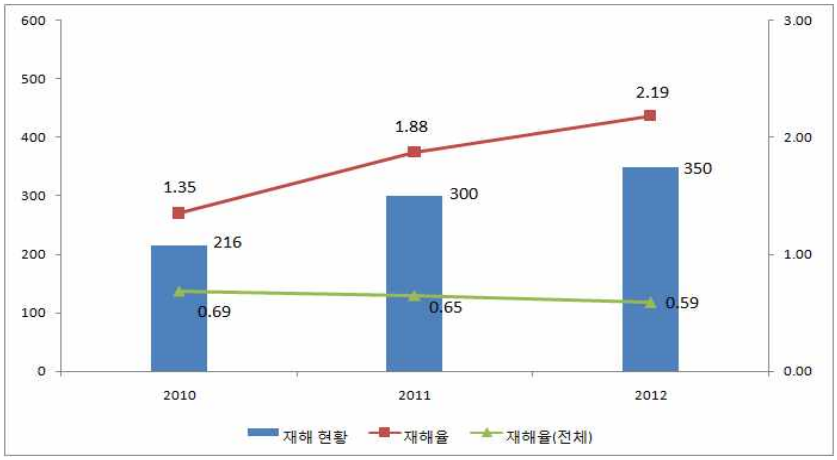

표 8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노동자 공무상요양 현황

Ⅲ.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1.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 필요

집배원노동자는 초장시간 ·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 때문에 대부분이 뇌심혈관계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시한폭탄이 되어 배달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가 원인이 되어 골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건강상태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본부가 매년 1000명~1900명 규모의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합의하고 추진해왔지만 실제 인력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2년에 걸쳐 160명씩 총 32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실제 필요한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충원은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다.

2. 노동재해·직업병 현황 파악을 통한 노동환경 재조명 필요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축소·은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 현황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 재해 현황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집배원노동자들이 어떤 사고와 질병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집배원의 노동재해 상황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재조명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률상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증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공무원연금공단이 2014년 2월,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공무원)의 최근 3년간 재해발생경위내역을 파악하였다. 이 자료에는 기능직 집배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공무상요양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의 최근 3년간 재해발생경위내역을 파악하였다.

연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공무원)		비정규직 집배원 (별정직 + 상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전체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전체재해
2011	9	367	0	80	9	447	456
2012	8	395	1	90	9	485	494
2013	8	388	1	87	9	475	484
3년간 합	25	1,150	2	257	27	1,407	1,434
평균	8.3	383.3	0.7	85.7	9.0	469.0	478.0

표 1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

[표 1]은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이다.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전체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1,434명이 노동재해로 인정받았고, 그 중에서 사망은 27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478명의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에게 사망,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노동재해로 인정받고, 그 중 사망자는 9.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4년 4월 18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진행한 '순직 우정인 추모제'에서는 추모비에 2013년 순직한 19명 우정인의 이름이 새겼다고 한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속한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노동자(공무원)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한해 평균 8.3명의 우정인이 사망한다. 하지만, 추모비에는 19명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사망한 우정인 10명은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추모되고 있는지, 공식 기록보다 얼마나 많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가 죽어가거나 병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특히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 기능직 집배원과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만 따로 분리하여 노동재해율을 분석하였다[표 2].

연도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별정직 + 상시)		전체 집배원 노동자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전체재해
2011	5	292	0	80	5	372	377
2012	6	309	1	90	7	399	406
2013	6	305	1	87	7	392	399
3년간 합	17	906	2	257	19	1,163	1,182
평균	5.6	302	0.7	85.7	6.3	387.7	394.0

표 2 최근 3년간 집배원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

[표 2]를 살펴보면, 전체 집배원노동자의 최근 3년간 인정된 노동재해는 총 1,182건이다. 사망재해인정 건수는 총 19건, 사고 및 질병은 총 1,163건으로 나타났다. 집배원노동자는 평균적으로 6.3건 사망재해로 인정받고, 387.7건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매년 394.0건의 노동재해가 인정받고 있었다.

연도	사망	사고/질병	전체		정규직 집배원 수	비정규직 집배원 수	전체 집배원 수
2011	5	372	377		11,741	3,772	15,513
2012	7	399	406		11,761	3,751	15,512
2013	7	392	399		11,704	3,745	15,449
3년간 합	19	1,163	1,182		–	–	–
평균	6.3	387.7	394.0		11,735	3,756	15,491

표 3 최근 3년간 전체 집배원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과 전체 집배원 규모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 규모와 재해율을 분석하기 위해 [표 3]에서는 기능직 집배원과 비정규직 집배원의 인원과 전체 집배원 수를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평균 집배원노동자 수는 정규직이 11,735명, 비정규직이 3,756명으로 전체 집배원 노동자는 평균 15,491명이었다.

분류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2012년 기준)
노동자 수 (명)	15,491	15,548,423
노동재해 건수 (건)	394.0	92,256
노동재해율 (%)	2.54	0.59

표 4 집배원노동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 통계 수치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비교

[표 4]에서는 집배원 노동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 노동재해건수 및 노동자 수에 대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재해율을 비교한 것이다. 노동재해율이 전체 집배원노동자가 2.54%, 전체 노동자가 0.59%로 4.3배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재해 발생 원인분류 (원인은 중복 분석)	전체 집배원		
	사망	사고	전체재해 (%)
1. 교통사고	9	634	643 (54.4)
2. 기상악천후 기인 재해(빙판, 눈길, 폭우)	1	202	203 (17.2)
3. 근골격계 질환	0	184	184 (15.6)
4. 병원 방문지연 및 미룸	0	142	142 (12.0)
5. 과적, 과도한 물량 기인 재해	0	126	126 (10.7)
6. 우체국내 재해 (관리소홀, 파렛사고)	0	42	42 (3.6)
7. 뇌심혈관계 질환	8	19	27 (2.3)
8. 과로, 스트레스 (뇌심혈관계 질환 제외)	0	14	14 (1.2)
9. 기타	1	155	156 (13.2)
3년간 총 재해 건수	19	1,163	1,182

표 5 최근 3년간 집배원노동자에게 발생한 노동재해의 원인분류별 비율

[표 5]는 최근 3년간 집배원노동자에게 발생한 노동재해의 원인별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재해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해 당 원인이 되는 요인을 중복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집배원노동자에게 최근 3년간 발생하여 인정된 총 1,182건의 노동재해 중 교통사고가 643건(5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상악천후 기인 재해(빙판, 눈길, 폭우)가 203건(17.2%), 근골격계 질환이 184건(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병원 방문이

나 치료가 늦어져 병을 키우게 된 사례가 142건(12%)이나 된다는 결과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서도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동료가 본인의 일까지 해야 하는 겸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노동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병원 방문 지연은 노동재해의 원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집배원노동자의 사망재해와 사고 및 질병 유형별 재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진행한다.

II. 중대재해(사망재해)

지난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사망 재해 발생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총 25명(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7명이다.)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년간 27명이 공무로 사망한 것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군인, 공무원 등 제외)의 사망만인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전체의 연도별 사망만인율은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서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와 비교할 때 연도별로 130배~50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환 또한 사망만인율의 경우 연도별로 비교할 때 5배~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성재해도 마찬가지로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전체 노동자	
	사망원인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원인별)	사망만인율 (연도별)	사망만인율 (원인별)	사망만인율 (연도별)
2011	사고(급류)	1	0.320	2.9	0.010	1.3
	뇌심혈관계질환	4	1.278		0.194	
	교통사고	2	0.639		0.005	
	감염	2	0.639		n.a	
2012	뇌심혈관계질환	3	0.959	2.6	0.194	1.2
	교통사고	5	1.598		0.003	
2013	뇌심혈관계질환	4	1.278	2.6	n.a	
	교통사고	2	0.639			
	감염	1	0.320			
	간질환	1	0.320			

표 6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 비교

* 주 1: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사망자수/총 노동자수*10,000
* 주 2: 우정공무원 인원은 2011년 말 정원 기준 31,291명을 적용.
* 주 3: 2011년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14,362,372명. 2012년의 경우는 15,548,423명임.
*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한편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의 핵심에 놓여있는 집배원노동자의 경우를 더 자세히 분석하였을 때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만인율은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200배~1천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 비해 사망만인율이 6배~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성재해도 8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매년 1명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와 비교하면 무려 800배나 높은 사망만인율이다[표 7].

연도	사망원인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원인별		연도별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		
2011	사고(급류)	1	0.852	4	4.259	–	–
	뇌심혈관계질환	3	2.555				
	교통사고	1	0.852				
2012	뇌심혈관계질환	2	1.701	6	5.102	–	–
	교통사고	4	3.401			1	2.666
2013	뇌심혈관계질환	3	2.563	6	5.126	–	–
	교통사고	2	1.709			1	2.670
	간질환	1	0.854			–	–

표 7 정규직 집배원 사망만인율과 비정규직 집배원 사망만인율

* 주 1: 정규직 집배원 수는 2011년 11,741명, 2012년 11,761명, 2013년 11,704명으로 산정.
* 주 2: 비정규직 집배원 수는 2011년 3,772명, 2012년 3,751명, 2013년 3,745명으로 산정.

이렇듯 몇몇 요인이 크게 돌출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사망재해 요인이 다양한 반면, 집배원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나 뇌심혈관계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계	사고			질병		
	발생	사망자	사망자 비중	발생	사망자	사망자 비중
92,256	84,784	1,131	1%	7,472	730	10%
100%	92%	–	–	8%	–	–

표 8 2012년 전체 산업재해자(명)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2012년.

[표 8]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발생 특성은 압도적으로 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반면, 질병은 산재로 승인된 경우 사망비율이 사고보다 훨씬 높다. 질

병의 경우 '죽어야' 산재가 되는 형국이다.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보다는 추락 등의 재해가 가장 높다. 질병의 경우 기능직 집배원처럼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사망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고재해 원인	재해자수	비중	사고재해 원인	재해자수	비중
총계	84,784	100%			
넘어짐	15,681	18%	무너짐	635	1%
끼임	15,265	18%	화재	449	1%
떨어짐	14,228	17%	감전	412	0%
맞음	8,146	10%	화학물질누출접촉	391	0%
절단, 베임, 찔림	7,773	9%	폭발	383	0%
부딪힘	6,823	8%	폭력행위	379	0%
교통사고	3,873	5%	동물상해	322	0%
깔림	3,139	4%	기타	260	0%
무리한동작	2,454	3%	광산사고	27	0%
이상온도물체접촉	2,423	3%	빠짐, 익사	17	0%
체육행사	1,687	2%	산소결핍	17	0%

표 9 2012년 사고성 재해자수 현황(우리나라 노동자 전체, 명)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2012년.

[표 9]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사고성 재해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성 재해의 5%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는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른다.

	총계	재해자수	비중	사망비율
		7,472	100%	10%
직업병	소계	1,500	20%	27%
	진폐	897	12%	37%
	난청	275	4%	0%
	(중)금속중독	3	0%	33%
	유기용제중독	9	0%	89%
	특정화학 물질중독	44	1%	50%
	기 타(물리적/기압/감염)	251	3%	18%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5,655	76%	6%
	뇌·심혈관질환	526	7%	57%
	신체부담작업	1,616	22%	0%
	요통	3,724	50%	0%
	기타(정신질환 등)	244	3%	8%

표 10 2012년 직업성 질병 및 직업병 재해자수 현황(우리나라 노동자 전체, 명)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2012년.

그러나 [표 10]에서 보면, 질병의 경우는 다소 다른데 전체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뇌심혈관계질환이라는 점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특징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특히 집배원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른 업종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즉, 두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위험과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각 사망재해분석을 통해 어떻게 두 가지 대형의 재해원인을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 자료에서는 각 개인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기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사항이 없어 사망자의 연령이나 근속, 만성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방아쇠 효과는 어떤 것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어렵다.

승인 년도	지역	업무	재해 원인	기전
2011	부산	비배달	뇌심	* 신규업무 적응스트레스 * 결원 대체업무 * 무단결근자 징계에 대한 스트레스
2011	부산	배달	뇌심	* 결원발생 추가 배달 * 새주소 암기 압박 * 설 명절시 연일 야근(하루 12시간 이상_휴일없음)
2011	충청	배달	뇌심	* 다양한 업무를 맡음 * 설특송 업무 밤 11시까지 근무
2011	충청	배달	뇌심	* 책임이 높은 특별 송달, 내용증명, 계약등기 등의 우편물 책임 * 경영평가 스트레스 * 예금, 보험, 우체국쇼핑 등 마켓팅 목표 달성
2012	부산	배달	뇌심	* 18년 근속, 과도한 업무량. 6시 출근, 밤 늦게 퇴근
2012	서울	배달	뇌심	* 배달장소 고지대 * 설특송에 동료 유고로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사망직전 4일 간 특히)
2012	충청	비배달	뇌심	* 노조 지부장 활동 중 과로로 사망
2013	부산	배달	뇌심	* 12일간의 설특별 소통기간에 일 많이 함
2013	서울	배달	뇌심	* 2011년 말 뇌심질환으로 요양함 * 식사도 못할 정도의 바쁜 업무 중 2013년 사망
2013	전남	비배달	뇌심	* 체육행사 마라톤 후 쓰러짐
2013	전북	배달	뇌심	* 넘어지면서 뇌출혈, 고혈압으로 치료받다가 폐렴사망

표 11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현황

그러나 자료가 제공하는 내용으로만 분석했을 때,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업무(장시간 노동)', '신규업무로 인한 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표 11]. 공무원연금공단의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인정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업무는 '만성적 장시간 노동(절대적 인력부족, 겸배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 '설 특별기나 새

주소 암기 등으로 인한 일정시기의 부담 증가', '체육행사(마라톤)'과 같은 일시적 과로 등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 기준(산재보상보험법 상)

2)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정규직,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망자가 사고를 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사망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후자의 규모가 더 크다. 사고를 낸 경우는 사고를 내게 된 원인이 있을 테지만 사고조사 결과에는 그러한 조사 내용이 없다. 사고를 내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향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사고를 내게 된 상황이 기계결함(오토바이 오작동 또는 고장) 때문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판단력 감소', '집중력 감소' 등의 원인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피로'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12].

사고를 당한 경우도 단순히 타 차량의 실수나 잘못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방어기능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같은 이유가 작용했을 수 있다.

승인년도	지역	업무	재해원인	기전
2011	부산	비배달	교통사고	* 타차 중앙선 침범
2011	경인	배달	교통사고	* 회식 후 타차에 의한 피해
2012	경북	배달	교통사고	* 바리케이트를 보지 못해 부딪친 사고
2012	부산	배달	교통사고	* 오토바이와 함께 농수로에 추락
2012	부산	배달	교통사고	* 타차 불법유턴에 충돌
2012	부산	비배달	교통사고	* 타차 중앙선 침범 후 충돌
2012	서울	배달	교통사고	* 타차와 추돌
2013	경인	배달	교통사고	* 출근 중 방호벽 부딛침
2013	전남	배달	교통사고	* 뒤에서 타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2012	경인	배달_비정규직	교통사고	* 오토바이 버스충돌
2013	경인	배달_비정규직	교통사고	* 타차 중앙선 넘어 충돌

표 12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교통사고 사망 현황

3)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

[표 13]에서 기타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감염이 가장 많고 기타 간질환이나 급류에 휘말리는 사고 등이다. 감염의 경우 대부분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기전상의 특징을 살펴볼 때 역시 '피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간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전으로 볼 수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이 높은 요인과 이러한 요인들은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들로 해석할 수 있다.

급류에 휘말린 경우는 '무리한 업무 수행'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포장 도로, 산악지역도 다녀야 하는 집배원의 고충은 자칫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인터뷰에서 '악천후에 단 한 번도 업무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설사 내려지더라도 일하러 나갈 것이다. 업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승인 년도	지역	업무	재해원인	기전
2011	전남	비배달	감염(면역력저하)	* 패혈증
2011	전북	비배달	감염(면역력저하)	* 바이러스성 패혈증
2011	경인	배달	사고	* 급류에 휘말림
2013	경북	비배달	감염(면역력저하)	* 감기로 치료 중 피로누적으로 폐렴 사망
2013	부산	배달	간질환	* 간경화가 원인이 되어 간부전으로 사망

표 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기타 사망자 현황

결론적으로 비교집단보다 현저히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은 '과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Ⅲ.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1) 직업 관련성 질환 내역

① 뇌심혈관계질환

○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내역 분석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는 11건, 공무상 요양을 한 사례는 31건으로 나타났다. 각각 2011년 16건, 2012년 11건, 2013년 15건이 발생하였다.

연도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전체 집배원 수
	사망	질병			
2011년도	3	7	0	10	15,513
2012년도	2	5	0	7	15,512
2013년도	3	7	0	10	15,449
3년간 합	8	19	0	27	-
평균		9	0	9	15,491

표 14 최근 3년간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경위내역

[표 14]에서와 같이 정규직의 집배원 노동자만 따로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는 8건, 공무상 요양을 한 사례는 19건이었다. 한해 평균 집배원노동자에서 9건의 뇌심혈관계질환이 직업성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반면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의 경우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인정이 된 사례가 없었다.

분류	전체 집배원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2012년 기준)
노동자 수 (명)	15,491	15,548,423
뇌심혈관계질환 (건)	9	579
뇌심혈관계질환 만인율 (‰)	5.8	0.3

표 15 집배원노동자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뇌심혈관계질환 만인율 비교

[표 15]는 집배원노동자의 최근 3년간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평균과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만인율을 비교한 것이다. 충격적이게도 전체 노동자에 비해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이 19.3배 높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보고서에서는 집배원노동자의 초장시간 노동(연평균 노동시간은 3,379시간)과 소통시기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 과도한 겸배 등의 집배원 노동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노동환경이 '집배원노동자의 90% 정도가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의 시한폭탄을 안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의 지적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19배가 넘게 집배원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고, 죽어나가고 있었다.

○ 집배원노동자의 높은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 원인 분석

업무관련 뇌심혈관질환의 발병기전은 사고성, 과로성, 한시적 스트레스성, 만성 스트레스성 등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4]. 집배원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그날 모두 배달해야 하는 스트레스, 배달을 하면서 고객과의 대면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 자	대상질환	업무특성	조사대상	연구방법	교차비 또는 상대위험도
Russek 등 (1958)	심혈관질환	주 60시간 이상 근무	100명의 관상동맥환자(미국)	환자-대조군 연구	4.6
Buell P 등 (1960)	심혈관질환	주 48시간 이상 근무	동맥경화로 사망한 22,176명의 근로자(미국)	코호트 연구	주 48시간의 20% 이상 근무할 때 SMR 100 이상 증가
Thiel 등 (1973)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장시간근무(주 60시간)	심근경색환자 50명과 정상대조군 50명	환자-대조군 연구	연구환자 : 대조군 = 46% : 26%
Uehata 등 (1991)	과로사	주간근무 60시간 이상 혹은 월연장 50시간 이상	203명의 과로사 사례분석(일본)	환자-대조군 연구	과로사의 2/3 이상이 장시간 근무
Hayashi 등 (1996)	고혈압	주60시간 이상 근무	장시간근무자 25명 정상근무자 41명	환자-대조군 연구	확장기, 수축기 혈압이 모두 높았음

그림 1 장시간 근무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률 증가

[그림 1][5]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는 뇌심혈관계질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혈압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

[그림 2][6]는 노동시간과 심근경색증 발생에 관한 문헌 요약이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노동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그룹이 7~9시간인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률이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는 5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이 2배 이상이었다. 전국우정노조의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한 「우정종사원의 근로시간과 일·생활균형 실태조사와 개선방

4) 박정선.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5.12, 288-96.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2009.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2009.

안」 보고서에서는 집배원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11.03시간이라 하였다. 또한 약 47.2%가 한 달에 3주 이상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그림 2]에 기술된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상당부분을 집배원 노동자가 감내하고 있었다.

저 자	업무특성	연구방법비교	참고문헌
하루 노동시간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7~9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2.94배(1.39-6.25)	환자대조군 연구, 연령, 직업 보정	Working hours as a risk factor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Japan:case-control study. BMJ 1998;317:775-80
발생 한달 전 주당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심근경색 1.9배 (1.1-3.5)	음주,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작업 형태 등 보정	Overtime work, insufficient sleep, and risk of non-fat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Japanese men, OEM 2002;59:447-51
휴 일	2일 미만 심근경색 2.9배 (1.3-6.5)		
초과근무	주 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사람 5년 이내 사망하는 가능성이 2배 (1.02-3.95)	연령, 결혼상태, 흡연, 음주, 질병력 등 보정	Swedish twin study, 1999

그림 2 노동시간과 심근경색증 발생에 관한 문헌 요약

[그림 3][7]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률 증가에 대한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률을 2~3배 높인다는 연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2009.

저 자	대상질환	업무특성	조사대상	연구방법	교차비 또는 상대위험도
Bosma 등 (1997)	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업무조정권한이 낮은 군)	6,895명의 공무원(영국)	코호트 연구	1.93(1.34-2.77)
Karasek 등 (1981)	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업무요구도, 기술활용도, 업무자율도)	스웨덴 근로자를 무작위 추출 (1,912명 선정)	코호트 연구	업무요구도 : 1.29($p<0.025$) 기술활용도 : 1.44($p<0.01$) 업무자율도 : 6.6($p<0.0002$)
Johnson 등 (1989)	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높은 업무요구도, 낮은 업무지지도, 낮은 업무조정권)	스웨덴노동인구에서 무작위 추출 남자근로자 7,219명	코호트 연구	PR[1]=1.77($p<0.001$) SPR[2]=1.75
Steenland 등(1997)	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업무조정권한은 낮고 업무요구도 높은 군)	3,575명의 남자 근로자(스웨덴)	코호트 연구	RR[3]=1.08
Jiang 등 (1996)	심혈관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126명의 관상동맥환자(미국)	코호트 연구	2.8(1.0-1.77)
Siegrist 등 (1995)	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낮은 업무보상, 높은 업무부담)	263명의 blue-collar 근로자(독일)	코호트 연구	낮은 보상(직업불안정) : 3.41(0.81-14.50) 높은 업무부담 : 3.45(0.97-12.30)
Theorell 등 (1998)	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낮은 업무자유결정권, 업무긴장)	1,047명의 심근경색발생 근로자(스웨덴)	코호트 연구	낮은 업무자유도 : 1.4(1.0-2.0) 업무긴장 : 1.3(1.0-1.8)
May 등 (2002)	뇌혈관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2201명의 남자 (영국)	코호트 연구	치명적 스트로크 : 3.36(1.29-8.71) 비치명적 스트로크 : 1.25(0.82-1.92)

그림 3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률 증가

이상과 같이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 4배,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으로 심근경색 2.9배, △주당 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으로 5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 2배 이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2~3배 증가를 야기한다[그림 4].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반 노동자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이 19배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공무상요양이나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은폐된 사례들까지 고려해 보면 더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닥쳐올 미래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매일매일 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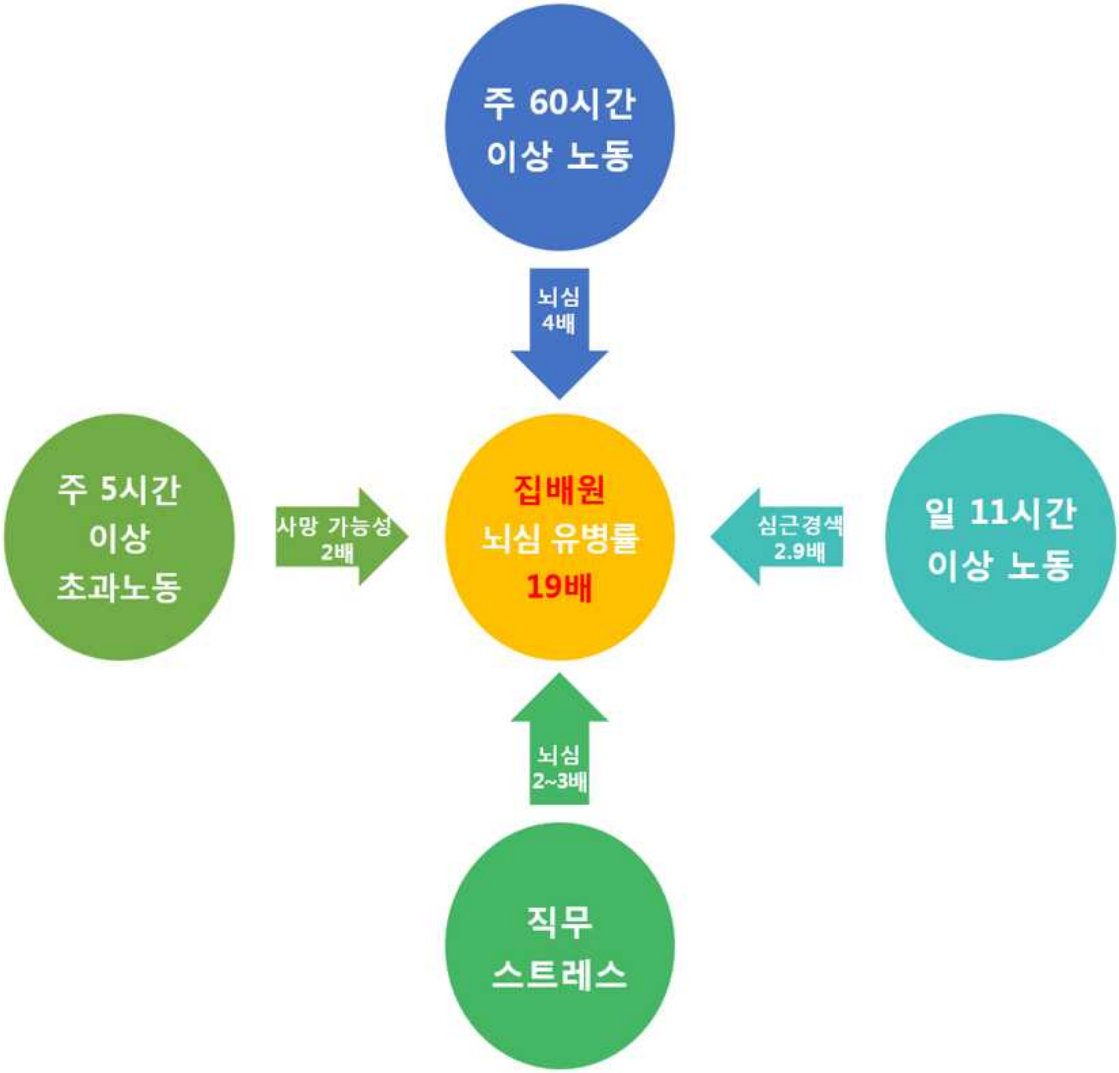

그림 4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 증가 요인

② 집배원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내역 분석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한 사례는 226건이었다. 각각 2011년 48건, 2012년 47건, 2013년 131건이 발생하였다.

연도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전체 집배원 수
2011년도	36	9	45	15,513
2012년도	34	8	42	15,512
2013년도	90	8	98	15,449
3년간 합	160	25	185	-
평균	53.3	8.3	61.7	15,491

표 16 최근 3년간 집배원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경위내역

[표 16]에서와 같이 정규직의 집배원노동자만 따로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한 사례는 160건이었다. 한해 평균 집배원 노동자에서 53.3건의 근골격계질환이 직업성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비정규직 집배원 노동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인정이 된 사례가 25건이었다.

분류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2012년 기준)
노동자 수 (명)	15,491	15,548,423
근골격계질환 (건)	61.7	5,327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	39.8	3.43

표 17 집배원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비교

[표 17]은 집배원 노동자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 발생 평균과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만인율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에 비해 집배원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11.6배 높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가 43.3%에 달하고, 기존

의 다른 업종 연구와 비교하여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집배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가장 심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노동이라고 지적하였다.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으로는 작업자요인, 작업요인(노동강도),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집배원 노동자는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감당할 수 없는 물량 때문에 엄청난 작업속도로 배달 업무를 진행되어야 하고, 소통시기에 따라 물량이 폭증하거나 빈번한 겸배를 감내해야 한다. 또한 많은 물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대인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등 직무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고성 재해 내역

① 교통사고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배원이 가장 빈번하게 당하는 재해는 '교통사고'였다. 사망 9건, 사고 643건으로 54.4%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이 교통사고 경험률(51.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집배원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즉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은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율 집계가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통사고는 '개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집배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명백하게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상요양/산재처리가 바로 가능하다.(사례1)

> (사례1) 경인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2.09.12.(수)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11:00경 편도4차로에서 3차로를 갯벌타워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의 중앙을 지나다가, 우측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하여 부상함.

하지만 집배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는 '개인 과실'로 처리되어 심각하게 다치지 않고서는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공무상요양/산재를 바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사례2) 또한 집배원의 교통사고 경험률은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는데, 그 이유는 '과적,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위험이 배가되기 때문이다.(사례3)

> (사례2) 경북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08.19.(금) 15:40경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로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도로에 있는 모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상하였으나, 자가치료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진찰결과 '좌슬개골 및 경골외과 연골손상' 등으로 진단받음.

> (사례3) 경기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07.15.(금) 10:40경 배달을 위해 우천으로 미끄러운 굽은 오르막길을 이륜차로 이동하던 중, 이륜차에 적재되어 있던 우편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륜차 핸들에 `좌측 쇄골`이

부딪혀 부상함.

본인이 사고를 내는 경우들은 대체로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인력이 존재한다면 더 큰 병을 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과적의 경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법이 '교통법을 잘 지키자' 수준에만 그칠뿐더러 보호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재해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② 기상악천후 기인재해(빙판, 눈길, 폭우)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배원이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사고는 사망 1건, 사고 202건인 기상악천후에 기인한 재해였다. 폭우, 폭설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4) 경인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3.01.02.(수) 이륜차를 이용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던 중, 14:50경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이 핸들과 함께 꺾이면서 부상함

(사례5) 경북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2.07.06.(금) 이륜차를 이용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던 중, 13:10경 마을 진입로에서 급작스런 호우로 인하여 도로 위로 흘러내린 토사유출물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가슴'을 부상함.

기상악천후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폭우, 폭설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시행하는 우체국은 거의 없다. <우체국은 악천후 시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합니까?>라는 질문에 '안전 운행하라는 문자는 오지만 귀국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눈이 7~10cm 쌓여도 일단 나간다. 빨리 귀국하라고 하지만 일을 시작한 상황에서 어렵다. 다음 날 일이 두 배가 되니까' 등의 대답이 현실을 드러내준다.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지 않은 것은 분명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12월 OO우체국

3) 기타 재해 내역

① 병원 방문 지연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원 방문 지연 및 미룸으로 인해서 병이 악화된 경우가 142건(12%)으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이 너무 바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 방문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6) 경북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3.02.05.(화) 14:30경, 우편물을 배달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비로 인해 생긴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양측 발목을 접질려 부상하였고, 상병당시 설명절특별소통기간이라 통증을 참고 근무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2013.02.11.(월) 00:41경, OO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우측 기타 족근골의 골절 , 기타 사지 부분의 연조직염 (양측 발목),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음.

(사례7) 경인지방우정청 OO우체국 소포픽업 및 중간운송 담당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3년 02월 중순경부터 대학 개강전 지방대학교 기숙사로 보내는 책, 이불, 옷 등 큰 부피의 고중량 택배가 폭주하면서, 픽업과 운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 업무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2013.03.08. OO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뿌리부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음.

특별소통기가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사례8),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나와서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사례9)

(사례8) 후배가 어제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를 절며 일하더군요. 아침에 한의원가서 피 뽑고 왔대요. 연가내고 쉬라고 해도 일하네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2014년 설특별소통기 사고사례)

(사례9) 12월 3일 4명분의 겸배를 하구 나서 제 배달구역으로 이동하여 배달 중,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어요. 일주일 입원 후 출근 해달라는 전화를 밤낮으로 받아서 어쩔 수없이 출근하였지요! 처음에는 내근 작업만 하라더니 명절 다가와서 팀원들이 고생 한다고 배달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릎보조기 차고 설날특별소통기간에 일했습니다. (2014년 설특별소통기 사고사례)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순하게 생각되는 교통사고, 근골격계질환들은 바로 치료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무상재해/산업재해 신청을 채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재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우체국 내 재해

우체국 내 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 3년간 공무상재해/산업재해로 처리된 것은 42건으로 나타난다. 우체국 내 관리 소홀, 파렛 사고(사례10) 등이 주되게 일어나며, 집배원 뿐 아니라 우체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위험요소(사례11)가 된다. 우체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10) 강원지방우정청 OO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06.08.(수) 09:30경 리프트에 진입이 불가능한 윙바디 우편차량이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동료 집배원들과 파렛을 들어내리던 중, 파렛용기불량으로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우편물이 상병인의 얼굴로 쏟아지는 바람에 파렛을 놓쳐 파렛 밑부분이 왼쪽발에 부딪혀 부상함.

(사례11) 2012년 09월 24일 저녁 6시부터 OO집중국 소포 배분하는 일을 하는 도중 평파렛 2라인을 쌓다가 한 쪽 라인의 택배물건이 쏟아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③ 과적, 과도한 물량기인재해

과적,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126건으로 10.7%에 달한다. 과적, 과도한 물량은 오토바이 사고, 우체국 내 파렛 사고(사례12)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사례12) 2010년 12월 21일 04시 15분경 소포가 가득 적재된 파렛을 보관장소로 이동하던 중 튕겨져 나온 파렛 문에 안면부를 강하게 부딪쳐 보철한 치아가 파정되는 상처를 입음.

하지만 인터뷰 결과 우체국에서 과적에 대한 제재 혹은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 과도한 물량을 실어도 빠듯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이 너무 많은 우편물을 오토바이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여, 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

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례13) 배달지와 거리가 멀어서 다시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갈 때 그날 물량 다 싣고 감. 앞바퀴가 들려 넘어지기도 함.

(사례14)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우체국이 과적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적이 불가피함. 안전사고, 동절기 사고의 주요 원인임. 오르막길의 경우 핸들조작이 어려움.

(사례15) 시야가 방해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앞 쪽에도 짐을 실으니까.

(사례16) 부지기수. 무거운 것 많이 싣거나 신호 위반. 넘어지는 사고 대부분 과적. 미끄러운 것 보지 못하기도 하고. 빨리, 많이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사례17) 적재기준이 현재 없음. 집배원 개인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 140kg까지 실어본 적 있음. 제동장치를 걸 때, 내리막길 내려갈 때, 자갈밭 지나갈 때 사고가 나기도 함. 세워놓으면 무게를 못 이겨 넘어지기도 함.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으로 들어나는 것이다. 이를 제재하지조자 않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Ⅰ. 서론

○ 본 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최근 3년간의 재해발생경위를 토대로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를 분석한다.

○ 분석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관련 법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노동조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노동자의 건강권')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한 접근은 산업재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후적 보상 측면에 집중되었고,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논의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적인 규정으로만 인식되어왔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업장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재해발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수백 수천 건을 넘어서 심지어 수십 만 건에 이르고 있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8)]

첫째,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있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사업주 처벌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부실한 현장감독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2. 2. 8.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8조는 개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은 '정기감독' 과 '수시감독' 그리고 '특별감독' 으로 나눠지는데,

8) 지난 2013. 5. 20.부터 6.27.까지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주) 48개 센터에서 모두 212,8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조사되어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 감독'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특별감독'이 그나마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9]되어 있어,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감독'이 항상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현장 노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위반사항을 조사하기보다 사업주를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둘째, 검찰 및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다. 1981. 12.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최고 처벌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으나, 1990. 1.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고, 1996. 12. 개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의 최고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법 개정 의도와 달리 높이지 아니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00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은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벌금형도 2천만원을 넘은 경우가 없었다. 위반자당 평균 벌금 부과액은 최근 3년간 140만원 정도에 머물렀다. 이러한 법집행 결과는 사업주등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소액의 벌금을 물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을 갖게 만들고 재범의 유혹을 증대시켰다.[10]

---

9)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8조 제2항 제3호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10) 한국법제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000.9, 14면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인 조사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소수(0.1~0.5%)이고, 대부분 약식재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이 대부분 그대로 선고되고 있다.[1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12]"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재해의 사전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호법의 준수 의무는 더욱 강조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자이다.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은 2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3]

즉, 우편업무라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해야할 1차적 책임과 함께,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2차적 책임이 가중되어 부여되는 것이다.

---

11) 한국법제연구원, 상동, 14면

12)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재해가 수십 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수백 건에 이른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거니와, 더 나아가 해당 재해발생 경위서만을 살펴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가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면담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사업주의 의무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앞으로, 우정사업본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분석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03. 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일부개정 2013. 03. 23.)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고시 제2010-35호).

Ⅲ.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1) 기상상태 불안정(폭우·빙판·눈길 등)으로 인한 재해

① 주요 재해 사례

○ 우편배달 중, **폭우**로 인한 흙탕물로 배수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급물살에 의해 배수관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함. (경인지방우정청, 2011년)

○ 우편배달 중 **빙판길**에서 이륜차가 미끄러지면서 부상함. (경인체신청, 2011년)

○ 우편배달 중 **폭설**로 인해 결빙된 지역을 지나다 미끄러지면서 이륜차와 함께 넘어져 부상함. (서울지방우정청, 2011년) 외 다수.

② 법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14]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15]는 법 제26조의 작업중지 상황을 좀 더 세분화 하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는 사업주가 폭우, 폭설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14)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지시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③ 처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16]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중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 위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수권규정[17]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일환을 규정한 것임과 동시에 작업중지 상황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골격계 질환

① 주요 재해 사례

○ 고구마 20kg, 2박스를 픽업한 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하여 택배를 운반한 뒤부터 어깨가 욱신거리고 누군가에게 맞은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호전되리라 생각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통증이 악화하여 진찰결과,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측)'으로 진단받음. (전남지방우정청, 2012년)

○ 방문택배 접수를 한 후, 택배를 어깨와 목에 올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택배물 무게(17kg, 2개)로 인해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바쁜 업무로 통증을 참아오다 진찰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간)'으로 진단받음. (2013년, 서울지방우정청)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한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호[18]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이러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규정하고, 이를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구별하여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6조 제1호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조치)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위 규정의 수권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제1조[19]에 따르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제2호)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제8호)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제9호) 등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

○ **앞서 조사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비춰볼 때,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업무 대부분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하여 사업주는 크게 '유해요인의 조사 및 개선' 과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의무를 진다.

먼저, '유해요인의 조사 및 개선'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20])

---

19)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2)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와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8조[21])

(3)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9조[22])

(4)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의학적 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0조[23])

(5)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증상, 대처요령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1조[24])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6)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2조[25])

다음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업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있어 중량물의 제한을 두는 등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3조[26])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4조[27])

(3)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4조 (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에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적절한 보조도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5조[28])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에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5조[29])

③ 법 위반 사항

○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재해경위를 사례별로 분류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교통사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226건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 반복적으로 우편물을 분류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조사결과에서도, 설·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김장철에는 무거운 중량물이 많아 옮기는 과정에서 팔, 다리, 허리등을 다치는 경우가 빈번했고, 중량물을 오토바이에 싣고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팔꿈지 등에 과다한 힘이 들어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연 1회정도 방문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스트레칭 방법을 게시판에 붙여 놓는 정도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운반하기 어려운 중량물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의 적절한 보조도구를 지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보조도구로는 손수레 정도가 지급되었다.

○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2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대표적인 위반 사항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근골격계부담업무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조사, 인간공학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고(규칙 제658조 위반), 유해요인 조사 이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 시설등 필요한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규칙 제659조 위반), 근골격계질환자가 최근 3년간 226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체계적인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고(규칙 제662조 위반), 우편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중량물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규칙 제663조 위반),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에 대해 물품의 무게나 무게중심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규칙 제666조 위반) 등이다.

④ 처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 이하 관련 규정들이므로, 이러한 각 개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죄에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30]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 규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31]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30)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① 주요 재해 사례

○ 우편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인근도로로 진입하던 중, 굽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부상했으나, 배달우편물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계속 업무를 하였고, 통증이 악화되어 2011.01.18. 병원에서 진찰결과, '비파열성 대뇌동맥의 박리'로 진단받음. (충청체신청, 2011년)

② 법 위반 사항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재해발생 경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32]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33]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

3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보호구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호구를 지급하긴 하지만 제때 교체해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헬멧 이회의 보호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 교통사고의 경우, 운행자의 과실여부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적,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과중과 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③ 처벌규정

○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 관리하는 것과 과도한 업무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34]는 동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35]는 동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4)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우체국 내에서 발생한 재해

① 주요 재해 사례

○ 우체국 1층 발착장 외부 난간부근에 흩어져 있는 우편자루를 정리정돈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주변이 어두워 발을 헛디뎌 1.2m 난간 아래로 추락하면서 옆구리를 난간에 부딪쳐 '우측 늑골'을 부상함. (경인지방우정청, 2012년)

○ 우체국 발착장에서 소포우편물을 파렛에 싣고 차량에 상차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파렛가 넘어져 파렛 밑에 깔려 허리를 부상함. (경인지방우정청, 2011년)

② 법 위반 사항

○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36]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37]에서는 작업장의 출입문을 작업장

---

36)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38] 및 제22조[39]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조명과, 통로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최근 3년간의 재해발생경위 및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우편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바닥의 케이블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문틈에 손이 끼여 부상하거나, 새벽 무렵 하역장에서 우편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통로를 지나다가 부상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 이러한 재해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각 규정에 위반된다.

③ 처벌규정

○ 사업주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40]는 동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 규정이다.

니하다.

38)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0)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41]는 동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심혈관계 질환

① 주요 재해 사례

○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머리가 자꾸 아파 병원에서 진찰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뇌동맥류 및 척추동맥 박리'으로 진단받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도 없이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우편물 수집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동료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새로운 담당구역(통상35구)을 맡게 되어 구역 업무습득에 따른 잦은 시간외근무와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반복적인 우편물 구분작업과 조기 출근 및 늦은 퇴근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 발병・악화됨. (서울체신청, 2010년)

○ 자택 안방에서 수면을 취하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던 중, 왼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OO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우측)'으로 진단받음. 상병인의 주요업무는 각종 통상우편물 및 소포 배달로 장기간 겸배로 인한 업무과중, 장기부재 직원이 포함된 팀장으로 일하며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발병·악화됨. (충청지방우정청, 2013년)

② 법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9조[42]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4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여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거의 없거나, 건강검진 과정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진단, 상담 및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요양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조차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를 발병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9조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한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육체적 피로, 지속적인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③ 처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9조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43]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43)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44]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Ⅳ.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 사무실 내 건강장해 예방

① 법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호 및 제6호[45]에서는 사무실 내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와 환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의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분진 등 사무실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적절히 가동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49조[46]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건

---

44)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5)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조치)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 및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체국 내 집배실의 경우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공간이 많고, 실제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우편물 자체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무실 내 공기를 측정 및 평가하여 공기정화설비가 가동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분진'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어떠한 보건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칙 위반으로 평가된다.

② 처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장 이하의 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47]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 규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48]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

---

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49조 (사무실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산업재해 누락보고 및 허위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49]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50]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실제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Ⅴ. 결론

○ 산업안전보건법의 1차적 의무자인 사업주이자, 대표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정부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2차적 의무자이기도 한 우정사업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9)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구체적으로, ①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노동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대표적인 “근골격계부담작업장”이면서,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설 정도의 근골격계질환 다발사업장임에도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방지를 위해 법에서 요구한 가장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③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조차 실행하지 않았고, ④ 보호구의 지급, 작업장의 관리, 사무실 내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무엇보다,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살인적인 업무량과 기형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실제 통계에 보고되지 못하고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위와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현실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중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한 근본적인 원인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객관적인 요양근로자들의 재해경위서 기재내용 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Ⅰ.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우체국,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

○ 인력부족과 과중한 노동강도, 비정규직 활용은 우편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1,182건에 이르며, 사망은 19건에 달했다. 그러한 재해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체국은 장시간 노동, 과도한 물량 등 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칠 정도의 노동강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며, 또한 우체국 내가 아닌 국외 근무가 노동의 주를 이루는 집배원노동자의 경우 기상상태의 악화로 인해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상존하는 위험성은 3년간 사망 19건이라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우체국의 노동재해 유형에서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고, 기상악천후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많고, 근골격계질환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재해 유형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강도, 그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보건 조치는 형식에 치우쳐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재해의 책임

○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우체국 내에서보다는 외부에서 다수 발생하는데, 이는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근본적 원인은 업무를 서둘러 수행하고자 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를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의 인력관리 구조에 있다. 따라서 집배원노동자가

겪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노동재해라는 기본 관점에서 보상과 치료가 담보되어야 하며, 사고를 빈발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노동자들은 위험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귀국 조치를 취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있기에 집배원노동자들은 악천후를 감수하고 일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듣기 좋은 문구일 뿐이다.

○ 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게 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보건조치의 부실이나 노동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3. 숨겨진 노동재해

○ 드러난 사고나 사망사고만이 아니라 숨겨진 노동재해 및 재해의 은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노동자들 가운데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74.6%에 이르렀으며,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도 43.3%에 달하였다. 지난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명된 사례가 226건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골병드는 노동자들은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노동재해는 의도적으로 혹은 노동자들의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숨겨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경영평가로 인해 재해가 상당수 은폐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인력부족 상태가 유지되는 한 자신의 건강을 위한 휴식이나 치료에 필요한 요양 등이 다른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배원노동자들은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 숨겨진 노동재해를 제대로 드러내야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재해의 실 규모가 확인되고, 안전보건조치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

다. 또한 그렇게 재해의 규모가 확인되어야 근본적 처방을 찾는 노력 또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 우정사업본부의 책임 회피와 노동부의 눈감아주기

○ 연대모임은 2014년 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조치 위반이었으며, 이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사고,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집배원의 노동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 연대모임은 이와 동시에 집배현장에 만연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 노동부는 연대모임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으며,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몇몇 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대모임의 고발 내용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를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 연대모임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우체국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주요 질환 및 사고로 분류하여 검토했으며, 객관적인 요양근로자들의 재해경위서 기재내용 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번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노동자들을 사고와 골병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장시간 중노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무수한 노동재해를 숨기고 있다. 숨겨지고 은폐되는

노동재해를 끄집어내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의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이 조사는 형식적인 서류의 조사나 교육 실시, 보호 장구 지급 등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험을 야기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숨겨진 재해는 형식적인 조사만으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수시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조치와 감독이 필요하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대대적 점검으로 집배원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급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Ⅱ.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장시간 노동 실태

○ 집배원노동자는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고, 비수기에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폭주기에는 13시간 이상, 특별기에는 무려 15.3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운동연구소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일주일에 57.6~85.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늘어나는 우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보다 빠른 배송을 위한 우체국의 시스템은 상시적인 초과노동과 야간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를 활용, 변형근로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리고 있다. 반면 휴일, 휴가 등 휴식은 몹시 불충분한 상태이다. 부족한 인력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빼앗거나 축소시키고,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집배원노동자들을 압박한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편업 등에 대해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지만,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노동시간이나 그 가운데 야기되는 무료노동, 휴가의 비자발적 반납 등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다.

2. 과중한 노동강도

○ 집배 시스템의 팀 단위의 운영방식과 겸배구조가 장시간 노동 및 과중한 노동강도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의 집배시스템은 팀 단위로

우편물량을 소화하게 하지만, 집배원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구역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팀 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업무는 다시 팀에게 배분된다.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노동강도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팀 운영 방식이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성과 달성을 위한 효과적 인력 운영방식이라는 점에 착안, 우편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우체국이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숨기고 집배원노동자들이 팀 단위로, 개별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시간을 늘려 업무를 소화하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효율성 이전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 특히, 이는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고, 휴식과 치료의 권리마저 빼앗는 원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인력관리 및 집배 구조가 우체국을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동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및 과중한 노동 강도를 야기하는 구조는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충분한 인력충원, 예비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우편 물량은 수량의 증가만이 아니라 소포 · 등기 등 물량의 다양화로 인해 집배원의 노동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고 그에 반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집배원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최근 소규모의 인력 충원 및 토요 휴무 등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무 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그것이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체국의 장시간 노동은 토요근무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초과노동, 그리고 특별기에 더 심한 장시간 노동이 의례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시적 초과노동과 특별기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집배원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력을 포함한 인력 수준을 산출하고 그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겸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인력은 3%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인력 추가 수요이다. 상시적인 초과노동과 법상 휴게, 휴일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여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로 더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산정되고 충원되어야 한다.

Ⅲ.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시장논리가 본격 도입되고 전방위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우편사업 역시 정부의 정원 감축 및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다. 인력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시간제 노동 도입, 집배 광역화 등의 고용 및 집배 구조 개편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집배원의 장시간 중노동을 불러오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노동자들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노동 강도를 야기하는 팀 단위 겸배 제도 및 저임금 비정규직 인력 활용 등 구조 등이 우편사업에 자리 잡았다.

○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편서비스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우편서비스는 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사업이고, 민간화하거나 외주화하는 것에는 많은 경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편서비스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 그리고 그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자로서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의 책임자로서, 또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집배원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하거나 사망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나서서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이다. 또한 우편서비스의 최종 책임 주체는 국가인 바, 정부는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1. 참가자

-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경북. 총 8개 지역 32명.

2. 결과 정리

<안전 관련>

질문	응답
1. 우체국과 우체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	많다 21 / 적다 11
2. 우편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에 의해 부상을 당할 위험	많다 18 / 적다 14
3. 우체국과 우체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먼지가 흩날리는 경우	아주 많다 23 / 보통 8 / 적다 1
4. 업무 중 물건을 던지거나 투하해야 하는 경우	많다 22 / 적다 10
5. 노상에서 우편물을 다루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	많다 17 / 적다 15
6_1. 우체국이 오토바이 보호구를 제때 지급	예 22 / 아니오 10
6_2. 제때 교체	예 4 / 아니오 28
6_3. 헬멧 이외의 보호구를 지급	예 18 / 아니오 14
7. 우체국은 악천우시 작업 중지 등 조치	항상 7 / 가끔 9 / 거의 안 함 13 / 전혀 3
8_1. 우체국은 차량 진입시 차량 유도자를 배치	있다 2 / 없다 30
8_2. 지게차 등을 운행하는 경우, 우체국은 유도자를 배치	있다 0 / 없다 25 / 지게차 없음 7
8_3. 차량 유도자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적	있다 1 / 없다 25 / 기타 6
9. 우체국은 휴게시설을 적절하게 마련	예 26 / 아니오 5 / 기타 1
10. 우체국은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진행	예 31 / 아니오 1
11. 작업 중 지게차, 리프트, 컨베이어벨트 등을 사용	사용 11 / 미사용 19 / 모르겠다 2
12. 우체국이 너무 많은 우편물을 오토바이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	있다 17 / 없다 5

여, 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적	
13. 차량에서 우편물을 내리는 경우, 우편물을 위에서부터 내리지 않고, 쌓여 있는 우편물 중간에서 우편물을 빼야하는 경우	있다 21 / 없다 11
14. 우편물에 포함된 물건이나 물질 등으로 인하여 부상	있다 13 / 없다 19
15. 우체국 내부에 습도가 높은 곳, 통로 바닥 등에 전선이나 이동전선이 설치	있다 5 / 없다 27

1. 우체국과 우체국이 관리하는 장소(이하 노상에 우편물을 쌓아놓는 경우에는 노상도 포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은 없습니까?

- 많다 21 / 적다 11

-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너무나 경사지다.
- 위험 많음. 우체국이 넓기도 하고, 나가자마자 도로가 나와서 눈이 오면 위험.
- 우편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중간수도 지점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 장소가 비좁아서 그 곳에서 넘어질 위험이 많음. 우편물이 많아서 중간수도 지점 외부로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 때 책임을 집배원에게 돌림.
- 비좁아서 우편물에 넘어지는 경우나 트레이박스(우편물 담아놓는 용기)에 걸려 넘어짐. 박스에 부딪히기도 함.
- 우체국 처마에 우편물을 쌓아놓아 위험함. 눈 오면 미끄러움. 겨울에는 오토바이 세워놓고 짐 실을 때 미끄러움. 우편물 묶어놓는 밴딩테이프 발에 걸려서 넘어짐. 무릎관절 다침. 팔레트의 우편물이 무너져서 종종 다침. 차에 실을 때 팔레트 움직이다가 발을 찧는 경우도 있음.
- 맑은 날은 상관없지만 눈, 비 올 때 위험.
-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은 없지만, 건물이 낙후되어 있고 비좁음. 까대기(분류)하는 장소 협소. 집배실도 작음.
- 중간수도지점 컨테이너 바닥에 구멍이 나서 넘어질 위험 있었는데 직접 해결.
- 우체국 자체가 1층이 아니라 눈 묻은 오토바이가 지나간 자리에 물 떨어져 빙판이 됨.
-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철판이 비 오는 경우 미끄러움. 패드설치 요구했으나 예산 핑계대면서 넘어감.
- 컨베이어에서 택배 분류할 때 걸린다
- 택배 손잡이 묶는 줄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걸려 넘어짐
- 엘리베이터 한 대. 3층에서 오토바이 하차장까지 계단통해서 짐 옮기다가 넘어짐.

- 우체국 내부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 물에 젖으면 미끄러움. 이륜차 주차장에 천막이 반 밖에 없어서 눈 오는 날은 이륜차가 다 젖고, 다니기도 매우 위험함.
- 4~5년 전 우체국에서 환경개선이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시범국으로 선정되어 외부에서 컨설팅 받아서 개선함.
- 중간수도지점이 아파트 입구 컨테이너. 그런 위험이 많지는 않음.
- 청소 상태가 안 좋기는 하지만 청사가 새 건물이라 위험하지는 않음.

2. 우편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에 의해 부상을 당할 위험은 없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많다 18 / 적다 14

- 무겁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택배를 적재하다 보면 허리가 나가고, 어깨가 파열되는 직원들이 많음. 본인도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다니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봄.
- 크게 부상은 없음. 팔레트를 발로 차고 가는 등.
- 쌓는 과정에서는 큰 사고의 위험은 없지만 허리가 많이 아픔.
- 묶는 과정에서 손가락, 손목이 아픔.
- 중간수도장소에서 부상당하는 경우 있음.
- 설, 가을에는 무거운 것이 많아 팔, 어깨 아픔. 오토바이 타면 왼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 팔꿈치가 아파서 주사도 맞음. 우편함 위치가 높아서 발판 놓고 하다보면 어깨가 아픔.
- 늘 그런 위험 있음. 고중량 택배가 많아서 허리 다치는 경우 있음. 이전 우체국에서는 7년 동안 고중량 택배(2~30kg)가 없었는데 이번 우체국에서는 많음.
- 우편물이 무거워 허리다친 적이 2~3번 있음.
- 택배 끈이 날카로워 다치거나, 팔레트 끌다가 넘어짐.
- 높이 쌓으면 쏟아질 위험 있음.
- 우편물 들고가다 넘어져서 다리 다친 경험있음
- 행랑, 소쿠리 같은 것들을 선반에 올리다가 허리 삐끗
- 손 벨 위험.
- 택배를 손으로 들고 내려가다보니 위험. 철제빠레트 사이에 손이 끼거나 택배운반 과정에서 미끄러운 경우 있음.
- 발착에서 많이 사고가 남.
- 요즘 쇼핑책자가 많이 나와서 무거움. 팔목이 많이 아픔.

- 짐 실은 오토바이가 스탠딩이 안되서 넘어질 때 사고가 많이 남.

3. 우체국과 우체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먼지가 흩날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 아주 많다 23 / 보통 8 / 적다 1

- 흩날릴 때도 있지만 집배실에는 그냥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공간이 많다.
- 먼지 엄청 많음. 청소해도 하루만에 쌓임. 목이 칼칼함.
- 5~6시간 분류작업 할 때 생김. 우편물, 등기 때문에 종이먼지가 많음. 또한 외부에서도 먼지가 많은데, 특히 중간수도지점은 노상이라 더욱 많음.
- 우편물에서 나오는 먼지.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 팔레트 끌고 다닐 때 파여서 녹, 쇳가루 등이 생김.
- 순로구분기에서 편지 구분할 때 먼지 굉장히 많음. 분류작업 할 때도 많음. 탁상에 먼지 엄청 쌓여있음.
- 지하 환풍기 없음.
- 흩날리긴 하지만 많진 않다
-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 쌓임. 택배 작업장은 먼지구덩이.
- 청소는 매일하니까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우편물 자체에 먼지가 많음.
- 미세 먼지 등 작업환경 여건이 좋지 못하다.
- 집배실에 먼지가 많음. 손으로 만져보면 장난 아님. 환풍기 달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달아줌. 건물자체가 환풍기를 달 수 없는 구조라 돈이 많이 든다고 함. 청소도 집배원들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마심.
- 환경개선하면서 집배실에 집증기를 2대들였는데, 가동을하지않음. 아예 틀어주지 않고, 틀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음.

4. 업무 중 물건을 던지거나 투하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많다 22 / 적다 10

-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사람끼리 던지고 받는다.
- 분류할 때 컨베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던지는 경우 없음.
- 굉장히 많음. 대부분이 그러함. 택배, 옷 등 파손우려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던짐.
- 까대기(분류)할 때. 집중국, 물류센터 2층에서 동 별로 분류할 때 던짐. 차곡차곡 놓을 수 없는 환경. 2kg 미만 소포는 던지면서 함.

- 굉장히 많음. 택배는 던지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됨. 2~5kg 짜리 던짐. 너무 무거운 것 빼고 대부분 던짐.
- 택배, 책자 분류시.
- 거의 없다
- 택배우편물 구분 작업할 때 약간. 찰과상, 골절 사고 등 발생.

5. 노상에서 우편물을 다루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은 없습니까? 있다면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 많다 17 / 적다 15

- 배달지역에 차 공업사들이 몰려있어 수리 센터, 세차장이 많음. 그래서 겨울에 길들이 다 얼고, 빙판길 많음. 차들도 많아 사고위험 높음
- 빙판길에서 한 번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음.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남. 집배원보다는 상대편 과실이 많지만, 오토바이다보니 피해 입음. 우정사업본부는 경미한 사고 무시하고, 집배원만 몰아붙이고 징계줌.
- 이동 중에 교통사고, 무게에 못 이겨 넘어지는 등. 엄청 실어야 되니까 안 좋은 길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짐.
- 큰 부상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위험 존재. 단독주택의 경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움. 우편함도 양철로 되어 있어 손이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 있음.
- 차도에서 위험. 이면도로 같은 경우 더욱 위험.
- 시간이 없어서 우편물 보면서 분류하다보니 주변 잘 못 살피고 다니게 됨.
- 배달하는 곳 전체 위험. 매일 60km씩 배달하는데 경사로 많아서 위험.
- 비 오는 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비가 많이 오면 미끄럽고 위험.
- 택배 옮길 때, 팔레트 사이에 손가락 끼는 경우. 무거운 물건 2~3개씩 들 때 허리 아프고 들고 가는 과정에서 고중량 택배 같은 경우 더욱 위험.
- 큰 도로, 상가 끼고 있는 곳은 교통사고 위험성. 우편물 싣거나 달릴 때도, 적재하고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 부러지는 경우 있음. 적재량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있음.
- 비탈진 곳이 많아서 오토바이 세워 놓으면 밀림.
- 우편물 적재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주변 경계가 느슨해져 다른 위험을 인지할 수 없음. (충돌이나 추돌 등)
- 위험 다반사. 뒤에서 다른 차가 받는 경우도 많음.

- 도로 이동시. 외곽은 미끄러우니까 넘어지고, 노면상태가 별로여서 위험.
-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 외곽지역 왕복 30km 달려야 하지만 사고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음. 논길에서 넘어진 경우 있었는데 지나가던 트랙터가 견인해서 겨우 꺼내줌.
- 차들이 너무 달리므로 위험성 많음.
- 위험지역이라고 관리하는 곳이 있음. 우천, 눈, 비 구역별/지역별로 사진과 함께 주의사항 명기.
  - 우편물 손에 쥐고 배달하는 것 때문에 손목, 손가락이 아픔.
-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실어놓은 물건을 잡다가 손목 부상 당하는 경우 많음.
- 책자가 너무 무거워서 20가구씩 들고 다니면 손목이 많이 시큰거림.

6. 우체국이 오토바이 보호구를 제때 지급하고(6_1), 제때 교체해 주나요(6_2)? 헬멧 이외의 보호구를 지급해 주나요(6_3)?

- 6_1 예 22 / 아니오 10
- 6_2 예 4 / 아니오 28
_ 6_3 예 18 / 아니오 14

- 겨울에는 일부에게 무릎보호대를 지급.
- 지급된 적 없음.
- 헬멧은 오토바이 교체를 3년 정도 마다 해주는데 그 때 교체. 토시와 안장이 뜨거우니까 깔개 지급. 무릎보호대 한 번 지급. 무릎에서 발목까지 덮는데,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음.
- 헬멧, 무릎보호대 지급. 현장에 비치해두지만 불편해서 쓰기 어려움.
- 오토바이 바퀴 체인 1번 지급. 실효성 없음.
- 타이어체인, 아이젠 지급.
- 목장갑 한 달에 10개 지급.
- 헬멧, 무릎보호대 안 주다가 요구하니까 줌.
- 무릎보호대 1년 1번 지급.
- 4년 마다 오토바이 교체시기에 헬멧 지급. 무릎보호대 주지만 불편해서 안함. 헬멧 쓰면 머리 아프고 여름에 더워서 쓰기 힘들다. 작은 길로 들어오면 벗는다.
- 무릎보호대는 가끔 줘서 개인이 사서 쓴다
- 헬멧 2년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안전 때문에 얇은 하계용 말고 겨울용 지급. 하지만 불편해서 출국, 귀국시에만 착용하고, 배달시에는 작업모.

- 겨울에 오토바이를 받게 되면, 겨울 헬멧을 1년 내내, 여름이면 여름 헬멧만 써야 함. 사이즈도 획일적.
- 예전에는 하계, 동계용 따로 헬멧 줬는데, 지금은 하나만 줌. 오토바이 앞유리, 뒤에 통도 지급 안 됨. 무릎보호대 지급 안 됨.
- 요즘은 25,000km 이상 타야 오토바이 교체되기도 해서 주기가 더 늦어지기도 함.
- 정해진 제 때 지급은 없고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줌. 제때 교체는 안 됨. 동료직원 여분을 빌려쓰는 경우 있음.
- 정강이 보호대를 과거에 한 번 지급한 적 있다. 근데 불편해서 쓰기 어렵지만 쓰는 사람도 있다
- 무릎보호대를 주는데 뛰어다녀야 해서 매우 불편함. 잘 안 씀.
- 겨울에 오토바이 아대 팀에 1개 지급.
- 헬멧 이외에는 요구해도 예산 핑계로 지급 안 함. 외곽 뛰는 사람만 싸워서 체인 지급.
- 무릎보호대 사고나면 지급.
- 헬맷은 불량이 생기면 바꿔줌. 예전에는 스노우타이어, 체인도 줬었는데 올해는 수요조사함. 올해 처음으로 눈스프레이 1개씩 지급 받음
- 주기별로 헬맷 교체. 여유분 있으면 제때 교체 해주지만, 거의 여유분이 없음.

7. 우체국은 악천우시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합니까?

- 항상 7 / 가끔 9 / 거의 안함 13 / 전혀 3

- 예전에 비 많이 왔을 때 한 번. 그 외에는 없었음.
- 특별한 조치는 없음. 최근 문자로 악천우 피해서 잠시 쉬다가 마저 배달하고 들어와라라는 정도. 담당집배원이 책임지라는 입장.
- 장마철에 한 분 돌아가시고 심각해짐. 천재지변시 청에서 과장 통해서 배달중지 내리지만 작업중지하기 어려움.
- 문자로 비가 많이 옵니다 취약지역 안전운행하십시오 이런 내용 옴. 귀국하라는 이야기는 없음.
- 거의 안 취해짐. 3년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빠른 등기, 특급만 치고 들어와라 연락. 하지만 이런 경우 거의 없음.
- 거의 안 함. 몇 년에 한 번 엄청 눈 왔을 때. 10년에 3~4번. 빠른 것만 치고 들어오라는 연락, 문자.
- 위험하니까 안 되겠으면 그냥 들어와라' 라는 내용의 문자는 보냄. 하지만 물량이

많아서 돌아오기 어려움.
- 눈 많이 오면 조기 귀국하라고 문자. 등기, 택배 먼저 치고 무리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지만 물량은 자기가 처리해야 함.
- 한 번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적 있으나 물량 많아서 다 배달했음. 4년 전 눈 많이 왔을 때. 한 달에 1~2번 조심히 하라는 문자는 옴.
- 아주 늦게 연락. 할 수 있는 것 하고 와라. 정 불안하면 보고하고 들어와라.
- 비, 눈 많이 왔을 때 "빨리 마무리하고 들어와라"는 문자 말고 다른 조치 없음.
- 문자로 대충하고 들어오라고 하지만, 한참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쉽지 않음. 실제 들어가는 비율은 50:50.
- 귀국 문자는 오는데, 실제 들어간 적은 거의 없음. 4~5년 전에 폭설로 귀국한적 1회.
- 눈 비 많이 오지 않아 문자가 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문자와도 100명 1명 정도 귀국함.
- 위에서는 국 재량껏 하라고 내려오고, 문자로 작업중지 명령 옴. 중지한 이후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지하기 곤란. 생물택배는 급한 걸로 분류 가능한데, 등기는 뭐가 급한지 알 수가 없음.
- 최근에는 조치를 취하고 다들 중지한다. 시골이라 눈 오면 정말 누구도 못 들어간다.
- 총괄국에서 문자로 그만하고 들어오라는 문자 보내지만, 민원 생기면 어차피 내가 나가야 하니까 그냥 한다.
- 문자오면 각자 알아서. 50:50.
- 태풍 같은 거 오면 청에서 재량껏하라고 통보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으니 귀국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 작업중지는 없음. 안전운전 문자 한 통 오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
- 3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오후되니까 다 눈치보면서 일하러 나가더라.
- 일단 나가라고 하고 오후 3~4시 문자. 즉시 귀국 바람. 하지만 묵히면 다음 날로 넘어가니 일이 두배로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음.
- 문자는 "조심하세요" 내용으로 옴. 알아서 하라는 것. 관리자 책임 안 지려고 문자 보냄.
- 눈이 7~10cm 이상일 때. 일단 나감. 나가지 말라고는 안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없음. 2~3시간 외근 후 문자로 빨리 귀국하라고 옴. 청에서 문자 와서 국에서 발송. 하지만 모든 짐 풀어놓은 상태에서 귀국하기 어려움.
-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음.
- 업무용 전화로 문자가 옴. 5~10cm 폭설이 왔을 때 연락이 왔었지만, 거의 들어가

지는못함.

8. 우체국은 차량 진입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합니까(8_1)? 지게차 등을 운행하는 경우, 우체국은 유도자를 배치하나요(8_2)? 차량 유도자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나요(8_3)?

- 8_1 있다 2 / 없다 30
- 8_2 있다 0 / 없다 25 / 지게차 없음 7
- 8_3 있다 1 / 없다 25 / 6

- 물류센터 붙어있어서 따로 출입구는 있으나 유도자는 없음 - 유도자 없음. 사고 크게 안남. 스스로 위험하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는 정도.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 - 지게차 사용은 연말연시, 설, 추석 택배 많을 때만 외부에서 빌려 사용. 집중국에 많고, 보통 우체국에서는 손으로 올려 작업. 12t 차량 5~6번 들어오지만 유도자 없음. - 아침에 방호원이 지휘봉 들고 안내 가끔. - 지게차는 우체국이 작아서 없음 - 방호원들이 11톤 택배 차량 들어오면 유도. 일반 고객 차는 안 함. - 방호원이 고객 주차 관리 하는 정도.

9. 우체국은 휴게시설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예 26 / 아니오 5 / 기타 1

- 휴게시설은 대부분 있다. 다만 바빠서 쉬지 못할 뿐이다. - 작년에 흡연실 설치, 탈의실 일부를 휴게실로 개조. 하지만 너무 춥기도 하고, 3층 집배실과 멀어서 잘 사용하지 않음. - tv, 정수기, 냉장고, 의자 있는 휴게실 있지만 인원에 비해 작음. - 남/여 따로. 하지만 휴게실에서 쉴 시간이 없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는 정도. - 마룻바닥 온돌,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는 이불과 베게, TV. 사용할 시간이 없고 아침, 구분할 때 잠시 쉬는 정도. - 우체국 작아서 없음. - 있다고는 하는데, 사용한 적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음. 집배실은 지하, 휴게실은 3층. 가기가 번거롭고 거의 사용하지 않음.

- 4평 공간에 TV, 안마기, 탈의실 같이.
- 열악하고 탈의실 용도임. 물품도 다른 부서에서 쓰다가 다 낡은 거 지급됨.
- TV, 책장, 자판기, 탁장. 저녁을 구내에서 지급 안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날은 저녁을 시켜 먹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한 팀 먹는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팀 먹고 난리도 아님
- 점심식사 휴게실에서 하고 전반적으로 괜찮음.
- 휴게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락커. 냉난방도 잘 안해줘서 담배만 피고 나오는 정도임.
- 쇼파 있는 온돌방. 3~4명 누울 수 있는 공간.
- 잘 되어 있는데 상급자 눈치가 보여서 이용하기 어렵다
- 있지만 열악. TV 없고, 4인용 소파 이런 것도 없음. 커피자판기, 정수기, 메모판, 컴퓨터 6대(3대 고장) 이런 것들이 자리 많이 차지하고, 바닥 공간이 없고 철제의자가 두 줄.
- 집배원70명. 휴게실 바쁠 때, 저녁에 잠시 쉬지만 공간이 협소. 팀별로 돌아가면서 쉬기도.
- 탁구대가 있어서 탁구 동호회정도만 오고 나머지는 거의 이용하지 않음.
- 쇼파 5인용 2줄 있어서 많아도 15명 정도 쉴 수 있음. 많은 인원이 쉬기 어려워 저녁을 시켜먹거나 팀별 회의 때만 사용.
- 있기는 한데 공간이 좁아 거의 이용하지 않음.
- 휴게실 갈 시간이 없음. 옷 갈아 입을 때, 빨래 건조할 때 사용. 쉴 때는 자기자리에서 쉼. 쉬는 시간이 따로 없음. 환경개선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 휴게실을 좋게 만들어 놓기는 했음.

10. 우체국은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예 31 / 아니오 1

- 보통 관내 경찰서에서 직접 와서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안전교육은 자주 진행. 경찰서에서 사고 사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도로교통법 준수, 방어운전 등 교육. 1시간 정도 진행.
- 2~3주에 1번. 아침에 30분 정도 진행. 헬멧 써라, 안전구호 외치기, 사고 나지 않게 해라, 자기가 책임져라, 가족이 불행해진다, 잘해라 등 별다른 내용은 없음. 형식적으로 진행.

- 동영상 시청하는 등 한 달에 1번. 안전운전 서약서 9개 항목 싸인, 신호위반-급출발 하지 않는다 등.
- 1년에 1~3번. 경찰서에서 사고사례 보여주고, 월요일 아침마다 안전 구호 외치는 등.
- 1주일 한 번 CS 교육할 때 안전교육. 분기에 1번 시간 내서 1시간 교육. 도로교통안전공사에서 오거나, 직원이 직접 교육.
- 경찰서에서 6개월 1번. 내용은 사고동영상, 교통법규.
- 간단한 교육과 안전구호 공모 진행.
- 1년에 1~2회 운전관리협회 외부강사가 강연.
- 주 1회 평소에는 실장님. 1년에 2~3회 초청강사.
- 경찰서에서 와서 한다. 형식적이다. 결의문 같은거 쓰고 그런다.
- 작년에 1번 경찰에서 교육. 일을 끝내고 교육하는 것이라 효과가 거의 없음. 시간외수당도 안 주고,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것도 어려움.
- 매 주 월요일 아침 진행, 월요일마다 선언하고 각서 씀.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 하겠다)

11. 작업 중 지게차, 리프트, 컨베이어벨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우체국은 이 기계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사용 11 / 미사용 19 / 모르겠다 2

- 컨베이어가 있는데 수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라 따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음.
- 시설 없음. 수작업으로 진행해서 업무 강도 높아짐.
- 컨베이어벨트 사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하지는 않고, 작동 안할 때 고장 점검.
- 지게차 있음. 빌려서 쓰는 거라 안전점검은 알 수 없음.
- 리프트 안전점검 거의 안 함.
- 발착시 사용하는 리프트 있음. 안전점검 하는지는 알 수 없음.
- 정기점검은 이루어지지만 형식적임
- 명절 때 자키(?) 유압식 잭 물량 많을 때 사용하나 안전점검은 안함.
- 컨베이어벨트 택배우편물 구분시 사용.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와서 점검. 집배원이 직접 연락.

12. 우체국이 너무 많은 우편물을 오토바이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하여, 운행에 어려움

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있다 17 / 없다 5

- 택배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기에는 항상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조그만 사고는 종종 있는 편이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해보았지만 이걸로 쉰 적은 없다.
- 우체국에서는 조금 실으라고 하는데, 물량이 많아서 싣고 가다 사고 나는 경우는 있음.
- 많이 싣게 하지는 않지만, 중간수도지점에 늦게 가져다주면 배달할 수 없고, 왔다갔다 할 수 없으니 무리가 되더라도 많이 싣고 나감. 물량이 많은 날은 특히 많이 싣게 됨.
- 과적 많음. 넘어지는 경우 많음.
- 중간수도지점 한 번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많이 싣고 가게 됨.
- 한 번에 최대한 가야하니까 사고위험 높음. 인력 적고, 차량 부족.
- 배달지와 거리가 멀어서 다시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갈 때 그날 물량 다 싣고 감. 앞바퀴가 들려 넘어지기도 함.
- 중간에 물량공급장소 있어 무겁지 않음.
- 현 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우체국이 과적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적이 불가피함. 안전사고, 동절기 사고의 주요 원인임. 오르막길의 경우 핸들조작이 어려움.
- 시야가 방해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앞 쪽에도 짐을 실으니까.
-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 손목이나 다리 부상
- 조금씩 싣고 다니라고 하지만 중간 수도 지점 왔다갔다 하면 1번에 10~15분, 3번이면 4~50분. 최대한 많이 싣고 갈 수밖에 없음.
- 중간운송 늦게 와서 지체, 외곽이니까 중간수도지점 없어서 무리하게 싣고 나감. 우체국은 너무 멀어서 중간운송 못해주겠다고 하고, 외곽지역 멀다고 안 해주다가 계속 요구하니 한 군데 만들어줌. 많이 싣고 나가는 직원들 있지만 관리자 별 말 안 함.
- 부지기수. 무거운 것 많이 싣거나 신호 위반. 넘어지는 사고 대부분 과적. 미끄러운 것 보지 못하기도 하고. 빨리, 많이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 최근 중간수도 운영이 잘 되어서 적재를 많이 하는 경우는 줄어듬. 물량에 따라 비례.
- 적재기준이 현재 없음. 집배원 개인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 140kg까지 실어본 적 있음. 제동장치를 걸 때, 내리막길 내려갈 때, 자갈밭 지나갈 때 사고가 나기도 함. 세워놓으면 무게를 못 이겨 넘어지기도 함.

- 물량 많아서 손목 인대 다친 적. 차 가지고 배달하라고 모닝 빌려준 적. 깁스하고 오토바이 운전 어려우니까..

13. 차량에서 우편물을 내리는 경우, 우편물을 위에서부터 내리지 않고, 쌓여 있는 우편물 중간에서 우편물을 빼야하는 경우는 없나요?

- 있다 21 / 없다 11

-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럴 땐 안 줄 수도 없고 피곤하다.
- 거의 없음.
- 가끔 특이하게 고객이 찾아와서 그런 경우는 있으나 미리 순서대로 분류-적재하기 때문에 별로 없음.
- 부피와 모양, 중량차이 때문에 순서대로 싣기 어려움. 싣고 가서 자기구역에서 중간중간 떨어뜨려 놓고 배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 고객들이 원하면 그 집 먼저 꺼내줌. 중간에서 빼다보면 팔목, 팔, 손목, 손가락에 무리가 가고, 손톱 뒤집힌 적도 있음. 우편물 담는 망에 다친 적도 있음.
- 거의 드물고 등기 찾으러 고객이 직접 올 때만.
- 이동 중 고객으로부터 교부요청을 받고 중간에서 교부하는 경우 발생함.
- 고객 민원. 경평 때문에 민원 처리를 잘 해주어야 함.

14. 우편물에 포함된 물건이나 물질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없나요?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 있다 13 / 없다 19

- 우편물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편지로 손 베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밖에 없는 것 같다.
- 손을 베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 많음.
- 고중량 택배 때문에 허리 아픈 경우.
- 종이에 손이 베임. 택배에 쇠 같은거 있어서 타박상.
- 택배 물건이 쇠봉이어서 팔레트 여는 순간 굴러 떨어지며, 발등을 찍혀 다침.
- 가벼운 찰과상
-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김치나 어류 같은 건 쏟아지면 물이 튀는데 난감하다
- 철에 찔리거나 하는 경우 있음

- 10~20kg 물건 떨어져서 발가락이 다친 적이 있음.

15. 우체국 내부에 습도가 높은 곳, 통로 바닥 등에 전선이나 이동전선이 설치된 경우는 없나요?

- 있다 5 / 없다 27

- 고객만족, 창구개선, 환경개선 등을 하면 내근직 포상. 그래서 요즘 정리를 많이 함. - 케이블 전선, 밴딩 끈 방치. - 신축 건물이라 없음. - 10년 안 된 건물. 선풍기 돌릴 때나 에어컨 틀 때 전선. - 그런 건 없는데, 파속기(편지 묶을때 사용하는 끈)가 제대로 안 풀어진 상태에서 밟아 넘어짐 - 청소할 때.

<보건 관련>

질문	응답
1.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경우, 우체국은 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예 20 / 아니오 12
2. 작업 과정에서 소음이 큰 경우	많다 13 / 보통 11 / 적다 8
3_1. 우체국은 매우 더운 여름에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	있다 8 / 없다 23 / 무응답 1
3_2. 여름에 소금과 음료수를 제공 받은 적	있다 21 / 없다 11
4_1. 우체국은 습도가 높은 여름에 피부질환 등을 방지 조치	있다 5 / 없다 27
4_2. 작업복을 탈의하고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있다 24 / 없다 5 / 기타 3
4_3. 목욕시설이나 세탁시설을 설치	있다 29 / 없다 3
5_1. 우체국은 추운 겨울에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	있다 8 / 없다 24
5_2.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이 제때 지급	예 3 / 아니오 29
6. 우체국 내에 공기정화설비 등이 가동	예 14 / 아니오 17 /

	모른다 1
7. 우체국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적	있다 13 / 없다 19
8. 우체국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있다 16 / 없다 16
9.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우체국은 중량물 겉에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안내표시	있다 14 / 없다 18
10. 우체국은 운반하기 어려운 중량물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제공	예 7 / 아니오 25
11. 우체국은 중량물을 다룰 때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 실시	있다 9 / 없다 23
12. 우체국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	있다 4 / 없다 28
13. 우체국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 진단, 상담을 실시	있다 1 / 없다 31
14. 우체국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	있다 1 / 없다 31
15. 우체국은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있다 0 / 없다 32

1.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경우, 우체국은 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나요?

- 예 20 / 아니오 12

- 마스크 지급. 고정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음. 작년 황사 왔을 때 지급.
- 지급 안 함.
- 황사가 심할 때 등산용 마스크 지급. 실내에서는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음.
- 자주 지급하지는 않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급하지만 물량 없다고 예산 핑계.
- 가끔 황사 심할 때 마스크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지급하지 않음.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
- 평상시에는 지급 안 하고, 황사, 미세먼지 있을 때 가끔 지급. 봄에 1번.
- 미세먼지 있을 때 두 개 지급. 그게 처음.
- 황사 때 일회용 마스크 한 번 지급.
- 작년에 많이 지급. 우체국 내에서는 안 쓰고 배달할 때 쓰고. 1년에 2번 주는데 여유분 있어서 따로 요청 안 함. 필요하면 달라고 하라 함. 하지만 마스크 쓰고 하면 주민들이 문을 안 열어서 어려울 때 있음.
- 지급을 하긴 하지만 때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몇 달에 한 번. 황사 때 3~4개 지급. 작년 5월 3개 주고 이후 준 적 없음.
- 주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1년에 2~3번 대청소 할 때 쓰는 화학약품이 너무 강해서 그 때만 지급.

2. 작업 과정에서 소음이 큰 경우는 없나요?

- 많다 13 / 보통 11 / 적다 8

- 집배실이 따로 있어서 소음은 없음.
- 우편물 분류할 때, 팔레트 끌 때.
- 순로구분기 소음 매우 큼. 하루 2~3시간 노출. 크게 이야기해야 들릴 정도.
- 우체국 내 물건 내릴 때.
- 순로구분기 2대 가동, 발착하고 집배실 같은 공간. 칸막이 없고, 복잡, 시끄러움.
- 난청이 많음. 헬맷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순로구분기 두 대가 집배실에 같이 있음. 제일 첫 모델이라 시끄럽고 오류도 40%. 유리칸막이 해달라고 했지만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옮기는 돈이나 새로 사는 거랑 같다며 옮겨주지도 않음. 6팀 중 3팀은 순로구분기에 가까이 있어 서로 말소리도 들리지 않음.
- 편지 끈 묶는 기계가 좀 시끄러움.

3. 우체국은 매우 더운 여름에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나요(3_1)? 여름에 소금과 음료수를 제공 받은 적이 있나요(3_2)?

- 3_1 있다 8 / 없다 23 / 무응답 1
- 3_2 있다 21 / 없다 11

- 가끔 냉커피 지급.
- 아침에 얼음물 받은 적 가끔 있음.
- 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음료수 2~3번 지급. 화채(수박)를 복날 때 가끔 지급.
- 작년 소금 지급. 아이스팩 요구해서 하나씩 지급.
- 에어컨 설치 안 되어 있고, 못 틀게 함. 한여름에 가끔 소금사탕 주지만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님.
- 예전에 소금을 주긴 했음. 가끔 수박화채, 미숫가루 줌.
- 쿨 팩 매 해 1번 정도. 팥빙수데이 한 번.
- 소금 알약 지급. 사다놓으면 각자 챙겨먹음. 음료수는 제공 안함.
- 수건 줌. 물 묻혀서 감고 다니라고 한 번. 음료수는 경조사 있을 때, 소금은 준 적 없음.
- 썬크림, 얼음물, 염분 보충 알약 지급.
- 별도 조치는 없고 집배행정실에 소금알약 비치하고 생수를 지급함. 그러나 항상

부족.
- 아무리 더워도 계획대로 해야 한다. 업무량이 많아서.
- 포도당, 소금 알약 휴게실 정수기 옆 비치. 생수병 제일 작은 것 지급. 지부장이 일주일~열흘 주고 끝.
- 나트륨(식용소금)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별 지급. 가끔 얼음물 지급함.
- 5리터 생수 한 번 나눠준 적 있음. 홍보용으로 사진 한 번 찍고 그 이후로는 받은 적이없음.
- 교육은 한 번 받은 적 있음. 물 많이 마셔라. 에너지 절약하느라 에어컨을 안 틀어서 내부도 매우 더움. 소금, 음료수는 아니지만 보온컵을 나눠준 적은 있음.

4. 우체국은 습도가 높은 여름에 피부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나요(4_1)? 작업복을 탈의하고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나요(4_2)? 목욕시설이나 세탁시설을 설치하였나요(4_3)?

- 4_1 있다 5 / 없다 27
- 4_2 있다 24 / 없다 5 / 기타 3
- 4_3 있다 29 / 없다 3

- 토시를 지급하고, 목욕실, 세탁시설 다 있다.
- 세탁실이 따로 있어 매일 세탁해 줌. 샤워실은 있으나 굉장히 낙후됐고, 집배원 170명인데 샤워꼭지가 1개 고장 나서 현재 5개.
- 탈의실 있음. 샤워실은 있지만 부족. 집배원 200명인데 샤워꼭지 15개. 겨울에는 온수가 안 나옴. 여름에만 사용. 세탁실은 2~3일 한 번 두 벌로 번갈아가면서 세탁. 매일 이용은 못함.
- 샤워장 운동기구와 함께 있음. 세탁기 한 대. 옷은 세탁소에 위탁해서 1주일 2번 세탁. 건조시설은 따로 없음.
- 샤워장 집배원 80명에 7~8개. 건조시설 없고, 세탁기 두 대, 작업복 일주일 2번 업체에서 세탁해줌.
- 엉덩이 등에 습진 많아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경우 많음. 세탁실이 따로 있어 작업복 세탁해줌. 샤워실은 있지만 인원수에 비해 매우 부족.
- 세탁기 3대, 집배복 팀별로 벗어놓으면 바로 세탁. 겨울에는 1주일 입고 벗어놓음. 샤워시설은 없음.
- 탈의실 있음. 세탁은 세탁실에서 다 해주고, 목욕실은 있으나 시설이 낙후. 집배원 107명 샤워실 2개.

- 탈의실 있음. 신발 말리는 시설 있음. 샤워실 있지만 물이 잘 안 나와서 거의 안 씀. 집배원 45명인데 2개. 세탁은 거래하는 세탁소가 있어서 장부에 적고 월, 수 걷어가는데 제대로 안 빨아줘서 개인적으로 세탁하는 사람 많음.
- 샤워실 씻을 수 있지만 집배원 109명에 샤워꼭지 10개. 세탁실, 탈의실 있음.
- 탈의실이 집배실 내 있고, 신발 말리는 시설 있음. 샤워실, 세탁시설 없음. 세제 3개만 줌. 집배원 9명.
- 썬크림 각자 바름. 탈의실 있음. 샤워실 집배원 70명, 샤워꼭지 10개. 세탁소를 정해놓고 1주일 가져가는 날 정해져 있음.
- 쿨토시, 썬크림, 핸드크림 지급
- 겨울헬멧을 지급 받은 경우 여름에도 그것을 착용해야 함. 머리에 피부질환 생기고 탈모 심함. 세탁은 외부 세탁소 계약으로 따로 세탁비 지급해 줌.
- 신발 건조기 고장난 지 4년. 세탁을 외주로 맡기는데, 복지포인트로 충당.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그냥 주말에 집에서 세탁함(겨울옷 한 벌임).
- 목욕시설이 있어도 관리자 눈치 때문에 잘 못쓴다. 집에 가서 씻는다.
- 탈의실 있음. 샤워실은 완전 낡음. 집배원 90명인데 4개밖에 없고, 수건도 부족. 세탁하시는 분 있어서 매일 내놓는데 3일 주기로 세탁이 되어 순환이 잘 안 됨.
- 제복이 땀 흡수 안 해서 온 몸에 땀띠. 등산복 사서 입으려고 해도 경평 때문에 민원 핑계로 못 입게 함. 탈의실은 협소하게 있음. 샤워실은 청에서 복지시설 설치하라고 하니까 원래 없다가 부랴부랴 만듬. 하지만 2명 들어갈 수 있고, 시멘트 바닥. 집배원 현재 35명. 세탁소 계약해서 1주일 1번 목요일 세탁. 예산 때문에 한 사람당 3벌로 제한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거의 집에서 각자 빨아옴.
- 두드러기가 오토바이 닿는 부분에 생김. 여름에는 안장 뜨겁기 때문에. 무좀도. 탈의실과 휴게실 같이 있음. 샤워실은 사용자에 비해 너무 적고, 세탁기는 비치. 세탁해주시는 분 따로 있음.
- 세탁시설이 있으나 세탁물이 더러워져 거의 사용 안 함. 샤워시설은 2개 있는데 사람수에 비해 적음. 비누 같은 것도 없고 수압이 약함.

5. 우체국은 매우 추운 겨울에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나요 (5_1)?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이 제때 지급하나요(5_2)?

- 5_1 있다 8 / 없다 24
- 5_2 예 3 / 아니오 29

- 원래 지급하는 규정복 1년에 한 번 지급. 바지는 우체국에서 자체 구입해서 6년

근무 하는 동안 두 번 지급 받음. 하지만 바지 질이 안 좋아 1년 입으면 헤짐.
- 지급되나 실효성 없고, 따뜻하지도 않음. 개인적으로 등산복 구매.
- 오뎅데이, 핫팩1~2번지급, 토시/방한모 몇 년 전 지급했으나 지금은 없음.
- 토시, 마스크 요구해서 지급. 신발은 없고, 원래 지급되는 작업복-작업화 지급. 작업화는2~3년에 1번 지급.
- 보일러는 물 쓰면 좀 지나면 뜨거운 물 안 나옴. 방한용품 제 때 지급 안 되고, 신발도 너무 싼 것 지급. 바람 들어와서 시릴 정도. 잠바도 질이 떨어짐. 땀 배출도 안 됨.
- 작업화는 너무 무겁고 딱딱해서 안 신게 됨. 손난로는 올 겨울 10~20개 지급.
- 제복 제한 없이 알아서 입으라고. 정규복 말고 따로 없음.
- 안면마스크 한 개 작년에 지급, 핫팩 2~3번 지급. 1시간 쓰면 굳음. 15년전 털모자 받은거 퇴직자한테 받은 거랑 목장갑 받음.
- 방한화 털 달린거 올해부터, 방한장갑은 일반 목장갑보다 약간 나은 정도.
- 보통 개인적으로 구매. 이번 겨울은 두꺼운 장갑 지급.
- 방한화 2년에 한번, 방한장갑, 방석 정도 지급.
- 방한장갑과 방한복은 보급되지만 방한모와 방한화는 없음. 개인이 사서 씀.
- 오토바이 손잡이, 방한모, 솜바지 정도는 2~3년에 한 번 꼴로 준다
- 아무 것도 없어서 알아서 더 옷을 껴입음. 얼굴가리개는 가끔 줌
- 오토바이 손토시 1개, 방한용 마스크 지급.
- 가끔 노조에서 장갑, 워머 중에 선택해서 지급하기는 함. (노조사업)
- 핫팩 정도 지원. 나머지는 알아서 구입.
- 솜바지, 두꺼운 잠바 등은 지급. 일회용손난로, 타이즈 등은 개인이 알아서 구입. 장갑도 알아서 구입. 고무줄, 호치케스 심도 안 주는데...

6. 우체국 내에 공기정화설비 등이 가동되고 있나요?

- 예 14 / 아니오 17 / 모른다 1

- 집배실에 한해서 보면 대부분 가동된다. 물론 다 가동되진 않는다.
- 환기장치 없음.
- 아주 심할 때는 가동하지만, 소리가 많이 남.
- 1대 있긴 하지만, 평수에 비해 너무 작고, 실효성과 용량 떨어짐.
- 있지만 잘 돌아가지 않음. 가동 잘 안 되고, 하는지 알 수 없고. 겨울에 창문 열 정도.

- 환풍기가 있는데, 전기세 때문에 거의 안 씀. 주로 창문 열어서 환기.
- 하긴 하는데, 시설 자체가 부족
- 기본환풍기만 가동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큰 거 있지만 가동 안 함. 먼지 신경 안 씀. 등기 취급하는 특수계, 물류과장 공기정화기 한 대씩 사용.
- 창문 열어야 함. 환기시설 관리가 잘 안 됨.
- 집증기가 있지만 작동 안 함.
- 문 여는 방법밖에 없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가 많음.

7. 우체국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있다 13 / 없다 19

- 잘 모르겠지만, 유해요인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흰 가운 입은 두 분이 오셔서 팔꿈치, 어깨 등을 보고, 스트레칭도 시키고, 나는 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고 가는 걸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다 검사 받을 순 없다.
- 우정노조 진행. 조합원 몇 명 대상.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난 뒤 한 달 뒤.
- 설문조사한 적 있으나 결과는 알 수 없음.
- 교육받을 때 설문조사.
- 2년에 한번
- 외부 간호사가 방문, 1년 1회 방문 하는 우체국도 있음.
- 많이 조사하기는 하지만, 어디서 한 건지는 기억이 나질 않음.

8. 우체국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 있다 16 / 없다 16

- 실제는 없다.
- 교육은 1년 1회 한다.
- 1년 1~2번 병원에서 나옴. 근육 당겨주는 테이핑 작업 등 자세 가르쳐주는 것 있었음.
- 줄 잡고 당기는 등 스트레칭 포함 교육 1~2번. 국민체조 1주 2회.
- 예방교육 수시로 진행하지만 교육 이외의 조치는 없음.
- 교육 1번. 4~5명 교육 전 치료받음. 근처병원에서 2번. 개인상해보험과 단체보험

으로. (우체국보험은 입원해야되서 잘 사용안함)
- 스트레칭 방법 게시판에 붙여놓는 정도.
- 교육. 운동하고 일하라고 고무줄 2000원짜리 2개 한 번 지급.
- 조사할 때 사진 찍은 것 게시
- 본 적 없음
- 근골격계 질환 방지를 위한 운동법, 스트레칭 포스터 붙이고 맨손체조 정도
- 1년에 한 번 2~30분 외부강사 초청 근골격계 관련 교육.
- 아침 조회 때 함께 몸 푸는 정도.
- 3~4년 전에… 최근에는 없음.

9.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우체국은 중량물 겉에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고 있나요?

- 있다 14 / 없다 18

- 중량표시는 모든 우편물에 다한다. 그러나 택배는 대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게중심 안내표시,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 노동자운동연구소 보고서 나오니까 중량표시하고, 같이 들기 어렵다 이런 내용 붙이긴 함.
- 중량표시 있긴 하지만 엉망인 경우가 많음. (특히 시골에서 온 택배의 경우)
- 있지만 글씨가 너무 작음.
- 무게만 표시
- 택배 기표지에 중량 적혀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움. 사이즈, 중량, 접수국 적혀있지만 너무 작음. 안내표시는 없음.
- 저울이 있음. 무게는 바코드 옆에 붙어 있음.
- 우편법상 30키로까지만 허용. 하지만 더 무거운 것도 우체국에서 받아줌. 중량표시는 되어 있으나 잘 안 보임.

10. 우체국은 운반하기 어려운 중량물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제공하고 있나요?

- 예 7 / 아니오 25

- 지하주차장까지 박스 나를 때 노란바구니 밑에 보조바퀴 달린 철제 기구 집배원당 한 개씩 지급.

- 손잡이 있음. 바퀴달린 것 일부 있지만 고장. 사람 수에 비해 많이 부족.
- 밖에서 카트 개인 구입.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이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 바퀴달린 대차 있음. 거의 개인별 사용가능.
- 자바라 한번 지급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아 사용 안함.
- 있기는 한데 쓰는 사람은 없음
- 지게를 준다
- 손구르마 전체로 사용, 대형차량별 1대씩.
- 손수레 말고는 없음. 손수레도 택배원만 줌.

11. 우체국은 중량물을 다룰 때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있다 9 / 없다 23

- 우체국에 스트레칭, 드는 방법 등 포스터를 붙여놓은 정도.
- 홍보물만 벽에 붙여놓음.
- 산업안전보건교육. 영상으로 무거운 물건 들 때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들어야 다치지 않는지 보여줌. 편하게 들 수 있는 방법.
- 간호사의 교육
- 1~2년에 한 번 정도
-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과 같이. 자세를 알려주고 무거운 것 드는 요령 알려줌.
- 실효성 없고 형식적. 동영상 자료 확인. 허리보호대 지급 요구했지만 못 받음.
- 작년에 1번 한 적 있음.

12. 우체국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있다 4 / 없다 28

- 일상화 교육 때 지시만 내림.
-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들어가는 홈페이지 전산망에서 가끔 실태조사 올라옴. 결과 볼 수는 없고, 그냥 하는구나 정도만 직접 찾아봐야 알 수 있음. 1년 1~2번 따로 시간을 내지는 않음.
- 설문지 몇 명에게만 돌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유, 불만 달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모두 대충 함.
- 검사관이 나와서 1회 실시
- 몇 년 전 한번. 최근에 없음.

- 1년 한 번 건강검진 때 문진표 체크하는 정도. - 최근에 없음

13. 우체국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 진단, 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있다 1 / 없다 31

- 1년 한 번 건강검진 때.

14. 우체국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한 적이 있나요?

- 있다 1 / 없다 31

- 평가 있었음. 교육 때 적어낸 정도. 작년 늦가을에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 처음 들음 - 건강검진 할 때 체크하는 정도 - 교육은 한 적 있음.

15. 우체국은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있다 0 / 없다 32

- 1년 한 번 건강검진. 그런 것 말고 없음. 몇 가지 형식적으로 하고 추가할 사람 말하라는 정도. - 이전 우체국에서 예방위해서 강의, 교육 1번. 정밀검사할 사람 사비로 하라고. - 금연캠페인 정도.

* 기타의견

- 우체국 내 집배작업장에는 우편물로 인한 미세먼지가 무수히 있지만 이를 측정해서 집배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례는 없음. 작업장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직원들 건강관리에 기여해야 할 것임. 반복되는 작업과 고중량 우편물(택배, 자루) 등을 다뤄 발생하는 어깨통증, 허리디스크 예방을 해야 함.
-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2배 정도 늘어나야 우리가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일할 수 있다.
- 50세가 넘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함. 허리디스크나 무릎이 손상되어서. 인력충원이 절실함. 노동시간 줄여야 함. 주말에도 일하는 거 없애야 함.